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재 상황*

심 경 호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방목에 근거한 과거 자료 정리 방향
- III. 방목 이외 과시, 반제 및 응제 관련 자료
 - 1. 문집 수록 과문
 - 2. 과문편집본
 - 3. 필기잡록류의 자료
 - 4. 단행 자료
 - 5. 시권
- IV. 맺는 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R1923541), 2020년 동양고전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논문 요약>

한국의 근대 이전의 ‘문’과 ‘학’은 정치권력과 화해하여 그것을 추동하거나 혹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내용을 모색해 왔다.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의 독자성을 운위하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는다. 종래 정치권력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인재 선발과 인력 관리의 방식이었다. 이에 정치권력의 향배를 이해하고 문과 학의 발전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과거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종래 조선시대 과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의 연혁과 합격자 등용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과거에서 부과된 문체나 제목은, 당시 국가가 인재에게 요구하는 현실감각을 문학 및 학문의 내용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념과 논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과거제도를 전면적,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행 세칙을 검토하는 이외에, 부과 문체 및 제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수 공용서적(운서, 자서 등), 수험대비용 서적, 수험결과 편찬물의 유통을 조사하여, 각 시대의 학술 경향과 문화적 역량, 학술논쟁의 역사와 학술방법의 변화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관련 자료가 방목 자료 이외에, 문집, 과문편집본, 필기잡록류, 단행(別行) 자료, 시권 등 다양한 종류의 문헌 자료에 편재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향후의 연구방향 설정에 작은 도움을 주고자 했다.

주제어: 과거, 과시(科試), 과시(科詩), 과문(科文), 반제(泮製), 응제(應製), 시권(試卷), 과문편집본.

I. 들어가는 말

종래의 문학 연구, 특히 한문학 연구는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을 참조하면서, 근대적 ‘개인’ 혹은 ‘주체’를 입증하고자 하는 면이 강했다. 이에 따라 근대 이전의 문학이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구 문학의 범주와는 다르다는 점을 망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의 문학실천은 서구의 그것을 가지고 재단할 수는 없으며, 역사적 기능과 의의를 실상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정조의 『일등록』은 전체 4부류 2,688항목인데, 4분류는 정조의 통치 방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문학’은 ‘문과 학’이다. 문장과 학문(경학)이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신료들의 요건을 이 둘의 일치로 본 것이다. 다음으로 ‘정사’는 구체적인 행정과 치도의 이념을 포괄한다. ‘인물’은 인물 감평이 바로 지인(知人)의 중요한 방도이며, 지인은 또한 애민의 방도라는 정치철학에 근거한 분류이다. 마지막의 ‘훈어’는 영조 때부터의 훈요식 정치 방식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듯 ‘문학’의 관념은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 이전의 ‘문’과 ‘학’은 정치권력과 화해하여 그것을 추동하거나 혹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내용을 모색해 왔다.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의 독자성을 운위하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는다. 종래 정치권력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인재 선발과 인력 관리의 방식이었다. 이에 정치권력의 향배를 이해하고 문과 학의 발전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과거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 이전의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과거는 인재 선발의 최선책이거나 불가피한 방법으로 간주되었고, 동시에 참된 인재들을 선발하지 못하는 불량한 제도로서 조롱되기도 했다.

정만조(鄭萬朝, 1858-1936)의 『科試及科文』(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소장)은 그가 192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사로 임명된 이후 교재로

집필했던 원고의 첩필등사본이다.¹⁾ 그 원고본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하는 방법은 과거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한 과거보다 좋지 않은 것이 없다. 어찌서인가? 만약 과거로 사람을 뽑지 않으면 이미 표준이 없게 되고 또한 방한(防閑)이 없게 되니, 반드시 그 능력을 시험하고 그 우열을 상고(詳考)하며 그 고하를 품별(品別)하여 차례대로 취하여 등용하면 위로는 함부로 관직을 제수하는 폐단이 없고 아래로는 인재를 재야에 버려지는 곤란한 일이 없을 테니, 또한 좋지 아니한가? (중략) 서한(西漢)이 일어난 때에 이르러, 현량(賢良)하고 방정(方正)한 선비를 뽑아 대책시(對策試)를 치루고, 또 효렴과(孝廉科)와 역전과(力田科)의 이름이 있었으니, 이것이 과거의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이다. 수당(隋唐) 이래로 흔히 사(詞)·부(賦)로 사람을 뽑아서, 과거의 폐단이 마침내 일어났다. 그 후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명경과(明經科)·대책과(對策科) 등의 과목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품격은 날로 떨어지고 풍속은 날로 구차해져서 요행(僥倖)의 문과 조진(躁進)의 길을 열었다. 주나라가 덕행으로 빈객을 천거한 것과 한나라가 현량한 이를 대책으로 등용한 것은 그 기풍이 점차 멀어져서 인재를 무리지어 조정에 나아가는 것이 상고시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불선(不善)하지 않겠는가?²⁾

이어서 정만조는 고려 광종 때 후주인 쌍기가 지공거가 되어 진사과, 명경과 등을 설치했고,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과거제도가 점차 번다하게 되었다고 과거사를 개괄했다.³⁾

1) 鄭萬朝, 『科試及科文』,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소장. pdf.

2) 選舉之法, 莫善於科舉, 而亦莫不善於科舉. 何者? 若不以科舉舉人, 既無標準, 亦無防閑, 必試其能, 考其優劣, 品其高下, 以次取用, 則上無濫授之弊, 下無野遺之難, 不亦善乎? (중략) 至西漢盛時, 舉賢良方正之士, 試以對策, 又有孝廉力田科之名, 此科舉之名之始起也. 隋唐以降, 多以詞賦取人, 而科舉之弊遂作. 其後非無博學鴻詞·明經·對策等科目, 而世級日下, 俗尚日偷, 闕僥倖之門, 躁進之路. 周賓德行, 漢策賢良, 其風漸遠, 而人才之彙進, 有不及上古, 詎非不善者乎?

3) 至高麗光宗九年, 後周人雙冀, 隨冊使而來獻議設科, 遂命爲知貢舉, 以詩賦訟策試取, 稱進士, 以易書詩春秋試取, 稱明經, 又以醫卜律書數地理三禮三傳何論等諸業試取, 亦賜出身. 自是至麗末, 規程屢變, 而大略不出雙氏所定之外. 李朝太祖元年, 始定文武科制, 而仍用麗制, 其翌年定爲式年法. 以子卯午酉年爲式年,

한편, 이응백 님은 1962년의 논문 「갑오경장 이전의 작문 교육」에서, 정만조의 개설을 바탕으로 하되, 『실록』, 법전, 문집의 관련 기록, 과문 습작 대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科詩分韻』의 발굴 등을 통하여 과거 제도과 과거 시험의 명목을 더 상세히 논했다.⁴⁾ 그리고 이병혁 님은 「한국과문연구 - 시(詩)·부(賦)를 중심으로 -」(『동양학』 16-1, 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6, pp.1-34), 「과문의 형식고(II)-표·책을 중심으로-」(『동양한문학연구』 2, 부산한문학회=동양한문학회, 1987, pp.169-192), 「한국과문연구(III)」(『동양한문학연구』 12, 부산한문학회=동양한문학회, 1998, pp.187-204) 등 일련의 옥고를 통해서 과문의 형식을 상세하게 논술했다.⁵⁾

정만조는 과거의 폐단은 과거시험의 명목이 너무 번다하다는 점, 과문의 체제에 너무 얽매인다는 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지금의 학교는 바로 과거법을 개정한 것이지 과거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제강점기 교육제도와 선발법을 칭송했다.⁶⁾ 그 결론은 받아들일 것이 없다. 그런데 정만조가 과목과 관련하여 시(詩)에 대해 “평측률에서 이백의 「양양가」를 모방한다.”라고 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⁷⁾ 「양양가」에 “천

取文科三十三人, 武科無定額, 而常什佰於文科, 取生員進士科, 各百人. 生員者即麗之明經, 而進士仍麗稱也. 太宗元年, 勅設廣科, 自此科制漸繁.

4) 이응백, 「갑오경장 이전의 작문 교육」, 『국어교육』 4,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62, pp.1-73.

5) 이병혁, 『한국한문학의 탐구』, 국학자료원, 2003.

6) 夫科擧之弊, 一則科試之名目太繁, 一則科文之體裁太拘. 是以選難其精, 才有所局, 又況考試者, 未必皆有藻鑑有公心乎? 且使不繁不拘, 考試者得其人, 不以先之教育不可也. 教育不明, 徒尙科擧, 是不治其本而治其末也. 所以廢科擧而興學校, 以復古昔家塾庠序國學之制, 而迂儒曲士, 尙有以科擧之廢爲深憾, 何其固也? 今之學校, 亦科擧之制也. 嚮者, 文武科之居甲者, 直授六品職, 生進科之被選者, 亦隨才補蔭官. 今大學卒業者, 直無礙爲高等官, 雖中學高等卒業, 皆有就職之望. 嚮者, 占大小科者, 必賜紅白牌, 今學校卒業, 皆有證書褒狀之授, 此皆何異乎科擧也? 故余則曰: “今之學校, 卽科擧法之改良者也, 非廢科擧也.”

7) 고대 과거팀 주 : 건륭(乾隆) 초부터 갑자기 별격(別格)이 생겨 3운(韻)으로 1단(段)을 삼는데, 그 중단(中段)에는 반드시 대우(對耦)를 사용한다. 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격률(格律)이 없었으니, 이것이 하나의 폐단이다. 춘경(春

금의 준마로 소첩을 바꾸니, 웃으며 조안에 앉아 낙매곡을 노래하네. 멀리 보이는 한수 압두처럼 푸르니, 포도주가 처음으로 발효하는 듯하네(千金駿馬換小妾, 笑坐雕鞍歌落梅. 遙看漢水鴨頭綠, 恰似葡萄初醖醕)”라고 했는데, 그 평측은 “平平仄仄仄仄仄, 仄仄平平平仄平. 平平仄仄仄平仄, 仄仄平平平仄平”이다. 정만조는 과시 형식이 중국시 근체시의 평측률과 달리 엄법(簾法)을 지키지 않는 기원을 지적한 셈이다. 종래 조선 후기 과체시의 기원에 관해서는 이학규(李學逵)가 『동사일지(東史日知)』에서 변계량(卞季良) 창안설을 거론했고, 정약용(丁若鏞)도 그 설을 따랐다. 하지만 이학규가 말한 과체시 형식이 18구(련) 형식을 가리키는지, 제4구(련) 말의 지정운자 압운법을 가리키는지, 구중 평측률에 관한 것인지,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정만조의 언급을 통해, 과체시의 평측률 가운데서 엄법이 악부 형식에서 기원한 것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정만조는 그 평측률이 변계량의 고안이라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필자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하면, 변계량은 엄률을 고안해서 과시에 강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정범조나 이후의 학자들은 고시(考試)의 평가 등급에 대해서 그리 주의하지 않았다. 고려 과거를 보면 처음에는 갑, 을, 병과로 하다가, 몽골 지배하 때 을, 병, 동진사로 등급을 나누었고, 조선 초에도 그것을 준용하다가 1468년(세조 14) 무자 식년시에서 甲科·乙科·丙科로 나누었다. 종종 때는 갑과·을과·병과와 1등·2등·3등을 번갈아 사용하다가, 1546년(명종 1)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까지 갑과·을과·병과로 고정되었다.⁸⁾ 과시의 자료를 정리할 때는 이와 같은 등급 분류

亭) 변계량(卞季良)이 처음으로 과시(科詩)를 지으면서 「양양가(襄陽歌)」의 성률(聲律)을 모방했다.

8) 1393년(태조 2) 병오 식년시에서는 乙科·丙科·同進士로 고려 과거제를 따랐고, 1414년(태종 14) 갑오 식년시에서는 乙科一等·乙科二等進士·乙科三等同進士, 1414년 갑오 친시에서는 乙科一等·乙科二等·乙科三等, 1416년

의 변천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I. 방목에 근거한 과거 자료 정리 방향

정만조는 『科試及科文』에서 증광과로부터 식년시에 이르기까지 과거 시험의 명목(名目)을 열거했다. 무과(武科), 음양과(陰陽科), 역과(譯科), 의과(醫科), 율과(律科) 등 4과를 제외하고 문과에 관련된 것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增廣試：取文武生進，額數與式年科同。遇國有大慶則設。

重 試：太宗七年設。試文武堂下三品以下官，被選者，六品以上，陞堂上三品，六品以下，陞六品。例以十年一次設。

謁 聖：太宗十一年，幸太學謁孔廟，親試文武科，卽曰放榜。

親 試：太宗十六年，親臨殿庭試士。明宗初，改稱庭試。取文武科。

別 試：世祖六年設。并取文武科，或於外道設。如設於平壤則今平安道內人赴，設於咸興則今咸境道內人赴，而如設於松都濟州水原則只令本邑人赴。後每於丙年設謂之丙別。

拔英試：世祖十一年設。令文武宰臣赴。

登俊試：世祖十一年設拔英試尋設登俊試，文武從一品以下皆赴。英祖五十年設行，後不復設。

병신 친시에서는 乙科一等·乙科二等만을 두었다. 1438년(세종 20) 무오 식년시에 乙科·丙科·丁科로 나누어, 동진사를 정과로 바꿨으며, 1439년(세종 21) 기미 친시에서는 乙科·丙科만 선발하고, 1447년(세종 29) 경묘 친시에서는 乙科一等·丙科二等·丁科三等으로 나누었다. 1460년(세조 6) 경진 평양별시에서 처음으로 一等·二等·三等으로 나누고, 1468년(세조 14)에 무자 식년시에서 甲科·乙科·丙科로 나누고, 1468년 무자 중시에서 甲科·乙科·丙科·丁科로 나누었다. 을과·병과·동진사는 1438년(세종 20)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을과·병과·정과는 1506년(중종 1)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중종 때는 갑과·을과·병과와 1등·2등·3등을 번갈아 사용했다. 1546년(명종 원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까지 갑과·을과·병과로 고정되었다.

進賢試：聖宗十二年設，仍廢。

賢良科：中宗十四年設，仍罷榜後屢復旋罷。

到記：中宗二十八年設。自國初養士於成均館及中東南西四學館學儒生之赴食堂者，謂之到記。曾多課試之例，而未嘗賜第。至是科名稱到記，春秋試以講製，魁者竝直赴殿試。

圓點儒生應製：明宗十七年設。館學儒生，到記日數最多者，謂之圓點，後只稱館學儒生應製。

黃柑：明宗十九年，濟州貢柑上來試。館學儒生領柑，魁者直赴殿試。

節日製：成宗三年，以三月三日，九月九日試。太學之士，以令節娛樂也。孝宗九年，七月七夕，亦試士。英祖八年人日，亦試士。魁者或直赴殿試，或直赴會試。

殿講：列朝多有臨軒試講之時。至明宗十六年，落點館學儒生試講一經賜第。英祖二十年定為每月一次。通者直赴殿試，或直赴會試。

耆老科：英祖三十二年設。文武功六十歲以上赴舉。魁者直陞通政正三品。

宗親科：成宗十八年，命宗親講經史。太王二年設，璫派儒生應製。魁者直赴殿試，五年又設宗科庭試。

忠良科：英祖四十年設。並試文武，以忠烈顯節祠，忠臣子孫許赴。魁者直赴殿試。殿試：文宗元年設。

【自增廣以下文武科被選者，皆赴試分甲乙丙三等。甲科直授六品職，蔭官之已陞六品以上者，直授通政階。放榜日賜紅牌，庭試及謁聖，即日放榜，與殿試同，故凡直赴殿試者，未及殿試，而值廷試與謁聖，則依赴殿試例來赴(賜紅牌式年文科同。生進科放榜日賜白牌。】

式年初試：以式年前秋設。漢城分三所，各取五十人。外道以道之大小，分排滿三百人(文科初試無定額)，入格者赴會試。

增廣初試：與式年初試同，但會試前設行。

別試初試：與增廣初試同。

監試初試：亦以式年前秋設。漢城分二所，各取二百人(生員初試百人，進士初試百人)。外道亦以道之大小，分排滿千人。入格者赴會試，增廣監試同，但生進會試前設行。

陞補：成均館大司成每年十二，抄以詩賦課試計畫，畫多者選，又四學教授亦以詩賦試士，各取四十人。大司成更聚試之，選其優者名曰合製，與計畫者，合為二十六人，又以小學試講取四人，並許赴生進會試。又以四書試

講取四人, 許赴式年文科會試. 外道設公都會如陞補例(但年一試), 每道取十人以內, 並許赴生進會試. 此皆自國初有之, 屢變其規而大略則同. 英祖時『續大典』所定如是.

<표 1> 법전 상 과거시험의 종류(○ 법전 상 규정 과거시험 총 30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권』(2015. 6) 도록에 의거하되 대륜차의 위치를 조정함

과거의 종류		단계				비고
		초시	복시	전시	기타	
식년시	식년문과	○	○	○		
	식년생원시	○	○	-		
	식년진사시	○	○	-		
부정기시	증광문과	○	○	○		
	증광생원시	○	○	-		
	증광진사시	○	○	-		
	별시문과	○	-	○		
	정시문과	(○)	-	○		
	알성문과	-	-	○		
	춘당대문과	-	-	○		
	文科重試				○	
	文臣庭試				○	
	외방별과	-	-		○	
기타1	殿講				○	문과의 일부
	節日製				○	
	黃柑製				○	
	通讀				○	
	到記科 製述				○	
	(大輪次)				○	
기타2	陞補				○	생진시의 일부
	四學合製				○	
	公都會				○	

그리고 정범조는 응거문(應舉文)의 격식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疑, 論孟庸學四書中, 摘其可疑者爲問題, 下其疑而對之, 約三十行.

義, 易書詩禮四經中, 摘一句爲題, 敷衍其義, 文體如支那近世八股文, 約三十行.

詩, 古詩文中, 摘一句爲題押, 題中一字爲韻, 押其字於第四聯, 十八韻無轉韻. 例
如題曰天命之謂性, 押天字, 第四韻押天, 餘十七韻, 皆用先韻. 平仄律倣李白
詩[「襄陽歌」: 필자 주]·千金駿馬換少妾, 笑坐雕鞍歌落梅音節.

賦, 命題與詩同, 但無押韻. 作者隨意轉韻, 必滿三十韻.

表, 題有賀進請謝辭乞六體. 例如「周群臣賀其命維新」, 「漢諸葛亮進出師表」, 「陶唐
華封人請祝聖人壽富多男子」, 「宋蘇軾謝命撤金蓮燭歸院」, 「殷傅說辭爰立作
相」, 「唐柳宗元乞以柳州易播州」. 製法純用四六長短並十八九聯.

策, 或以古事或以時務爲問題. 其對有虛頭中頭逐條說弊掇弊篇終之次序, 務過三
千字.

論, 與古文論體同.

箴銘頌等, 只出於御題, 皆用四字, 或並引. (近俗引必以四六)

<표 2> 문반 과거 종류별·단계별 고시과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권』(2015. 6) 도록에 의거)

과거 종류		단계1	단계2	고시과목 (단위: 篇, →: 左同)				
				조선초	경국대전	숙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생 진 시 (소 과)	式年生 員試	초시	-		四書疑1 五經義1	→ →	→ → 四經義1 (春秋今廢)	→ →
		복시	-		상동	상동	상동	상동
	式年進 士試	초시	-	賦1, 排律十韻詩 1(世宗)/賦1, 古詩·律詩 중 1(文宗)	賦1 古詩·銘· 箴 중 1	賦1 古詩1 (銘·箴 今廢)	→ →	→ → (賦30구, 詩17,8구 이상)
		복시	-		상동	상동	상동	상동
	增廣生 員試	초시	-			四書疑1 五經義1	→ → 四經義1 (春秋今廢)	→ →
		복시	-			상동	상동	상동
	增廣進 士試	초시	-			賦1 古詩1 (銘·箴 今廢)	→ →	→ →
		복시	-			상동	상동	상동

과거 종류		단계1	단계2	고시과목 (단위: 篇, →: 左同)				
				조선초	경국대전	숙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升補試	초시류	-			賦1 古詩1	→	→
	四學合 製合講	초시류				賦1 古詩1	→	→
						四書/小學	→	→
	公都會 製述 講書	초시류				賦1 古詩1	→	→
						四書	→	→
문 과 (대 과)	式年 文科	초시	초장	四書三經 背講/四書疑 ·五經義·論 중 2	四書疑·五 經義·論 중 2	四書疑1 論1 (初場五經 義今廢)	→ →	→ →
			중장		賦·頌·銘· 箴·記 중 1 表·箋 중 1	賦1 表·箋 중 1 (中場頌銘箴 記今廢)	→ →	→ →
			종장		對策1	→	→	→
		복시	초장		四書三經(五 經)의 背講	→ (周易, 春秋 倍劃)	→	→
			중장		賦·頌·銘· 箴·記 중 1 表·箋 중 1	賦1	→	→
			종장		對策1	→	→	→
		전시	-		對策·表· 箋·箴·頌· 制·詔 중 1	對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	→
	增廣 文科	초시	초장			四書疑1 論1	→ →	→ →
			중장			賦1 表·箋 중 1	→ →	→ →
			종장			對策1	→	→
		복시	초장			賦1 表·箋 중 1	→ →	→ →
			중장			-		
			종장			對策1	→	→
		전시	-			對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과거 종류		단계1	단계2	고시과목 (단위: 篇, →: 左同)				
				조선초	경국대전	숙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別試文科	초시	초장			論1 表·箋1 또는 賦1 (兩題輪回)		
			종장			對策1		
		(會講)	-			四書 중 1 三經 중 1		
		전시	-			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庭試文科	초시	-			賦1 表·箋 중 1		
		전시	-			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謁聖文科	전시	-			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春塘臺文科	전시	-			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外方別科	전시	-			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節日製	초시·복시류	-			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黃柑製	초시·복시류	-			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殿講	초시·복시류	-			三經 중 1경 背講		
	通讀製述講書	초시·복시류	-			賦1 表·箋·論 중 1		
			-			四書三經 背講		
	到記科製述講書	초시·복시류	-			賦1 表·箋·論 중1		
			-			三經 중 1경 背講		
大輪次	문과낙방							

과거 종류	단계1	단계2	고시과목 (단위: 篇, →: 左同)				
			조선초	경국대전	숙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자제시험 ○詩·賦 (인조실록, 은대조례)					
	賢良科	전시류	-	薦舉對策(中 宗實錄)			
文臣	文科重 試	전시류	-		策·表·箋·箴· 頌·制·詔·論· 賦·銘 중 1		
	文臣庭 試	전시류	-		律詩·策·表·箋· 箴·頌·制·詔· 論·賦·銘 중 1		
	文臣仲 月賦詩	전시류	-		詩·賦·表 중 2		
	文臣殿 講	전시류	-		五經 背講		

이상의 과거 명목과 과문에 대해서는 사마방목이나 문과방목을 통해 어느 정도 실상을 알 수가 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의 방목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런데 근대 이전에 방목의 총목을 작성한 예로 이공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燃藴室記述)』이 있어, 그 정리 방식과 주기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그 「등과총목」은 태조 2년(계유) 봄에 송개신(宋介臣) 등 33명을 뽑았으며, “을과(乙科)에 3명, 병과(丙科)에 7명, 동진사에 23명, 다음은 모두 같다.”라고 하고, 지공거(知貢舉)는 설장수(設長壽). 동지공거(同知貢舉)는 원굉(元紘)이라고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정조 18년(갑인) 2월 알성시에서 김근순(金近淳) 등 5명을 뽑았고, 부의 시제가 「문무길보(文武吉甫)」였음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 있다. 과시의 시기, 과시의 종별에 따른 합격자 수, 자료가 있는 경우 장원급제자와 고시관(試官/命官), 증광시·별시·정시 등등의 과시 문제를 충실하게 밝혔으며 증광시·별시·정시 등의 경우 설장(設場) 사유. 친림(親臨) 여부를 밝혔다. 단, 『연려실기술』의 「등과

9) 『연려실기술』 별집 제9권 관직전고(官職典故) 과거 III 등과 총목(登科總目).

총목」은 식년시와 생원시·진사사의 과제는 기록하지 않았다.

향후 『연려실기술』의 등과총목을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살펴 정확한 정보를 집적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조 8년(갑진) 토역 정시의 명은 『일성록』에는 「등현문(登賢門)」으로 명제(銘題)를 삼았다고 되어 있으나,¹⁰⁾ 『연려실기술』에는 「은사출(恩賜出)」이다. 또한 『일성록』 등의 기록을 통해 설정한 날짜를 비정해야 할 것이다.

III. 방목 이외 과시, 반제 및 응제 관련 자료

1. 문집 수록 과문

고려, 조선시대의 문집에는 과문을 수록한 예가 적지 않다. 윤선도(尹善道)의 문집인 『고산유고(孤山遺稿)』 권6 상 별집은 시(詩), 부(賦), 논(論), 책(策), 표전(表箋) 등의 과문을 분류해서 수록했다.¹¹⁾

시(詩)

- 01 인간의 역사책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다른 왕조의 임금을 섬긴 내용을 접하고서 느낀 소회를 적다 신해년(1611, 광해군3) [人間讀史各君臣 辛亥]
- 02 문인이 「육아」 시편을 전폐한 것에 대하여 신해년(1611, 광해군3) [門人廢蓼莪 辛亥]
- 03 시름 임자년(1612, 광해군4) [愁 壬子]
- 04 전당의 호수를 봄날에 바라보며[錢塘春望] 승보(陞補)에서 이중(二中)의 수석을 차지하였다.
- 05 맑은 바람 맑은 달은 돈 한 푼 안 들여도 바로 나의 것 신해년(1611, 광해군3) [淸風明月不用一錢買 辛亥]
- 06 눈을 무릅쓰고 고산을 방문하다[冒雪訪孤山] 임자년(1612, 광해군4) 감회(監會)에서 이상(二上)의 제이(第二)를 차지하였다.

10) 『일성록』, 정조 9년 을사(1785) 10월 28일(갑진).

11)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문집총간 DB, 이상현 역주, 『고산유고』, 2015.

07 가구가 수레보다도 작은 사람[家具小於車]

08 객의 마음을 흐르는 물에 씻다 무자년(1648, 인조26) [客心洗流水 戊子]

부(賦)

01 취선루의 과제(科題)에 답한 부[醉仙樓賦] 과제(科製)이다.

02 스승이 천자에게 일러줄 때에는 북면(北面)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詔於天子無北面賦] 절제(節製)에서 입격(入格)하였다.

03 위로 올라가서 옛사람과 벗을 하는 것에 대한 부 신해년(1611, 광해군3) [尙友賦 辛亥]

04 사마천(司馬遷)이 자기의 저서를 명산에 보관한 것에 대한 부[著書藏名山賦] 승보(陞補)에서 삼상(三上)의 제이(第二)를 차지하였다.

논(論)

01 동중서와 가의의 우열에 대해서 논하는 글[董仲舒賈誼優劣論] 과제(科製)에서 입격(入格)하였다.

02 꽃가지 하나를 꽃은 것에 대해서 논하는 글[簪花一枝論] 초시(初試)에서 이하(二下)의 등급으로, 절서책(節序策)과 함께 모두 입격(入格)하였으며 제이(第二)의 성적을 차지하였다.

03 증점이 요순의 기상을 지닌 것에 대해서 논하는 글[曾點有堯舜氣象論] 계유년(1633, 인조11) 향해(鄉解)에서 삼중(三中)의 등급으로, 「당이강청표(唐李絳請表)」와 함께 모두 입격(入格)하였으며 수석을 차지하였다.

책(策)

01 봄에 대한 대책문[對春策] 무진년(1628, 인조6)○별시 문과(別試文科) 초시(初試)에서 상지중(上之中)의 등급으로 대책문(對策文)의 수석을 차지하였다.

02 병가의 장기에 대한 대책문[對兵家長技策]

03 명절에 대한 대책문[對名節策] 경오년(1630, 인조8)○별시 문과(別試文科) 초시(初試)에서 상지중(上之中)의 등급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04 비오고 별 나는 것에 대한 대책문[對雨暘策]

05 법제에 대한 대책문[對法制策] 계유년(1633, 인조11)○회시(會試)에서 이하(二下)의 성적으로 급제하였다.

06 경전의 종지에 대한 대책문[對經傳宗旨策] 계유년(1633, 인조11)○전시(殿試)이다.

표전(表箋)

- 01 당나라 한림학사 백거이가 장수를 통제하고 군대를 통령하는 자리에 중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청한 것을 본떠서 지은 표문〔擬唐翰林學士白居易請勿以中官爲制將都統表〕
- 02 태산의 오송을 대신하여 대부에 봉해 준 것을 사양하는 표문〔代泰山五松辭封大夫表〕
- 03 고려 예부 원외시랑 광여가 약두산 한 봉우리를 하사해 준 은혜에 대해 사례한 것을 본떠서 지은 전문〔擬高麗禮部員外侍郎郭輿謝賜若頭山一峯箋〕
- 04 당나라 한림학사 이강이 역적의 재산을 절서의 백성들에게 하사하여 금년의 조부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청한 것을 본떠서 지은 표문〔擬唐翰林學士李絳請以逆人資財賜浙西百姓代今年租賦表〕 계유년(1633, 인조11)의 향해(鄉解)에서 삼상(三上)의 등급으로 「증점유요순기상론(曾點有堯舜氣象論)」과 함께 입격(入格)하며 수석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필자가 과안한 과문의 예를 더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姜希孟, 『私淑齋集』 卷6 策 「育才辨才用才之道」

“王若曰: 人材, 天下國家之極寶也. 其源出於心氣, 心氣陶於政化, 相因變化, 賢愚類分. 人主孰不舉而用之, 而不能者有三焉. 一者不知, 二者不切. 三者不合. 賢之不遇有三焉, 一者不通, 二者不敬, 三者不合, 不知者與不通者相遇,” 운운.

강희맹(1424-1483)은 24세 때인 1447년(세종 29, 정묘, 正統 12) 가을, 문과별시에 장원하여 중부시주부가 되었다. 이해 문과 식년시에는 이승소(李承召) 등 33인이 선발되었다. 추과(秋科) 중시(重試)에서 성삼문(成三問) 등 19명을 뽑았는데(고관(考官) : 좌의정 하연(河演), 이조판서 정인지, 예조판서 허조(許稠), 도승지 이사철(李思哲), 친시 중시(重試) 대거(對舉)에서 강희맹 등 26명을 뽑았다. 『세종실록』의 세종 29년 8월 27일(병술) 기사에 “문과 중시에 집현전 수찬 성삼문(成三問) 등 19인과, 무과에 사정(司正) 민유(閔諭) 등 21인과, 문과 별시에 강희맹(姜希孟) 등 26인과, 무과에 김정언(金精彦) 등 18인이 급제(及第)했는데, 임금이 전(殿)

에 나오지 못하므로 허위(虛位)를 근정전에 설치하고 방방(放榜)했다.”라고 되어 있다.¹²⁾

② 張晩, 『洛西集』 卷1, 「賜金龍扇」과 「題梅先生碑陰」

장만(張晩, 1566-1629, 시호는 忠定)의 문집은 7권 3책의 운각인서체자 활자본이다.¹³⁾ 권1에 정식시(程式詩) 2수가 있다. 첫 번째 「금용선을 하사하다[賜金龍扇]」는 작성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의 「매선생의 비음에 제하다[題梅先生碑陰]」는 장만이 24세 되던 1589년(선조 22, 기축) 진사시 회시(복시)에서 입격한 과시이다.

「금용선을 하사하다[賜金龍扇]」는 19운 19련(19구)의 장편고시로, 제목의 ‘扇’자를 선택하여 그 글자를 제4련 마지막 글자로 사용하고, 그 글자가 속하는 ‘去聲十七霰’ 운목(韻目)에 속하는 글자들로 압운(押韻)했다.¹⁴⁾ 각 구 안의 평측은 고시의 형식이다. 시의 3련(즉 조선에서 말하는 구) 1단의 모두 6단으로 구성하고 마지막 결미 1련(1구)를 두었다. 조선 후기 과시와 같은 구성이다. 다만, 조선후기의 과시와 달리, 장편고시의 평측율이다. 시제는 송나라 장영(張詠, 946-1015)의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¹⁵⁾ 장만은 장영이 여룡의 보주와 같은 재능을 지녀 훌륭한 문장을 만

12) 『세종실록』 권117, 세종 29년 정묘(1447) 8월 27일(병술).

13) 張晩, 『洛西集』, 民族文化推進會 編,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續 15, 民族文化推進會, 2006 ;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문집총간 DB ; 장만장군기념사업회, 『낙서집 번역본』, 2018 ; 심경호, 「낙서와 지천 최명길의 창수(唱酬) 및 지천의 서찰에 관하여」, 『열상고전연구』 71, 열상고전연구회, 2020.6.

14) 張晩, 「賜金龍扇」, 『洛西集』 卷之一 程式詩 ; 장만장군기념사업회, 『낙서집 번역본』, 2018, pp. 104-107. 번역과 해설은 필자가 조금 고쳤다.

15) 장영의 자는 복지(復之), 호는 괴애(乖崖),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송사(宋史)』 권293 「장영열전(張詠列傳)」이 있다. 장영은 강직함을 괴팍하고 모가 났다는 뜻의 ‘괴애’로 자신의 호를 삼았다. 익주 지사(益州知事), 항주 지사(杭州知事)를 지내고, 내직으로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 이부 상서(吏部尙書)를 지냈다. 저서에 『괴애집(乖崖集)』이 있다.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 신집(新集) 권18에 ‘사선미현(賜扇美獻)’의 장영 고사가 있다. 송나라 진종이 여사중승 장

들어 바쳐서 천자가 늘 쥐고 있던 금용선을 하사받았다는 사실을 우선 노래했다. 그리고 그 부채가 쉬파리를 내모는 기능을 하리라는 점을 말했다. 쉬파리는 『시경』 「소아(小雅) 청승(靑蠅)」에 나오듯 어진 사람을 무함하는 소인을 가리킨다. 장만은 금용선으로 ‘어진 바람(仁風)’을 일으키겠노라 다짐했다.

堯莫日永敝金闕, 舜琴風薰開玉殿. 01

龍顏一解御史詩, 文彩膾炙霜臺彦. 02

中官傳詔賜金龍, 拜舞丹墀紆帝眷. 03

清飈滿握魯練輕, 曾是君王手中扇. 04

驪珠初出碧海中, 筆頭文章龍虎戰. 05

莊鵬始舒北溟翼, 禰鸞端宜文舉薦. 06

平生有志勵秋霜, 正直還參烏府選. 07

清光得依日月邊, 逸思頗學風雲變. 08

神愁鬼泣累千篇, 鳳起蛟騰堆萬卷. 09

文星一耀北辰中, 錦囊忽入重瞳見. 10

清新奚啻大人作, 雅麗堪誇謝家練. 11

天書褒美賜顏色, 不世恩光生顧眄. 12

還將一扇寵錫予, 綵練團團月一片. 13

宮中試出鳳搖尾, 手裏纔揮風滿面. 14

薰薰猶惹御爐香, 皎皎新裁西蜀絹. 15

영에게 저술을 진헌하게 하여, 그 문장이 훌륭하다고 칭송하고는 늘 쥐고 있던 비단 금용선을 가져오라 하여 그에게 주면서, ‘오늘 문장을 진헌한 일을 찬미하노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산당사고(山堂肆考)』 권62에 ‘장영현문(張詠獻文)’ 항에 실려 있고, 『한원신서(翰苑新書)』 전집(前集) 권13에 ‘사금룡선(賜金龍扇)’ 항목에도 실려 있다. 『산당사고』의 기록은 조금 더 길다. 『言行錄』 張詠爲御史中丞, 眞宗曰: “卿平生著述幾多? 可進來.” 公遂以所著進, 上閱於龍圖閣, 未竟, 命賜坐, 且曰: “今日暑甚.” 令黃門, 於御几取常執紅納金龍扇, 賜公曰: “美今日獻文事.” 그 내용에 ‘환관이 가져오다, ‘늘 지니고 있던 금룡선’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青蠅肯教汚几筵? 五月不受炎威煽. 16

中心嘉貺當百朋, 入手翻教感淚漣. 17

非汝爲美美人貽, 奉揚仁風期不倦. 18

秋來何忍棄篋笥? 歲暮愈深犬馬戀. 19

요임금 명협에 긴 해 비칠 때 황금 대궐 트였고
순임금 오현금에 남풍 훈훈하여 옥 궁전이 열렸네.
용안은 어사(장영)의 시에 한바탕 환히 펴시고,
문체가 어사대의 관원들 사이에 회자되었네.
중관(내관)이 조칙을 전하여 금룡선을 하사하시매
붉은 섬돌 아래 절하고 춤추나니 황제의 총애가 감도누나.

맑은 회오리바람 손에 짝 차고 노나라 비단 부채 가볍나니
일찍이 군왕의 수중에 있었던 부채로다.
여룡의 보주가 푸른 바다로부터 갓 나오는 듯하더니
붓끝의 문장은 마치 청룡 백호 싸우는 듯했으며,
장자의 봉새가 비로소 북해에서 날개 펼치자,
독수리 예형이 공문거(공음) 천거 받았듯 천거받음이 마땅하여라.

평소 지닌 뜻을 추상처럼 가다듬었으니,
정직한 까닭에 되려 오부(어사대)의 선발에 들었네.
청수한 광채를 해 달 같은 황제 곁에 기댈 수 있고
분방한 상상은 변화무상한 풍운을 배웠도다.
귀신도 수심하고 울릴 만한 천 편이나 누적되고
봉황이 일어나고 교룡이 튀어오를 듯한 문장이 만 권으로 쌓였네.

문창성이 한번 북극성 가운데 빛을 내니
비단 시 주머니가 홀연 황제의 시선에 들었구나.
청신한 작품이 어찌 대가의 작품 뿐이리오
청아하고 미려함은 사안 집안 필런같이 자랑할만하여라.
조서로 표창하고 인견해 주시니
희세의 은택이 황제의 돌아보심에서 생겨나누나.

게다가 금룡선 한 자루를 내려주셨는데
채색 비단으로 등글게 만들어 한 조각 달 같아라.
궁중에서 한 번 봉 같은 부채 꼬리를 내와서,
손 안에서 한 번 휘두르자마자 만면에 바람이 생기네.
훈훈하기는 궁중 향로에서 향긋한 연기 생겨나듯 하고,
희고희기는 서촉 땅 비단을 갓 재단한 듯하여라.

쉬파리로 하여금 어찌 궤연을 더럽히게 만들까?
오늘월 여름에도 폭폭 찌는 더위를 느끼지 않으리라.
마음에 맞는 좋은 물건으로 만 냥과 맞먹는 것을
손에 넣자 문득 감격의 눈물이 떨어지누나.
너 부채가 예뻐서가 아니라 미인(군주)께서 주신 하사품이기 때문이니
삼가 어진 바람을 일으켜 싫증내지 않으리라 기억하네.

가을이 왔다 하여 어찌 차마 상자에 버려두리오?
세모에도 더욱 견마의 신하가 군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누나.

한편 장만이 24세 되던 1589년(선조 22, 기축) 진사시의 회시(복시)에서 입격한 과시 「매선생의 비움에 제하다[題梅先生碑陰]」는 24운 24련(24구)의 장편고시로, 제목 중 ‘碑’자를 선택하여 그 글자를 제15련 마지막 글자로 사용하고, 그 글자가 속하는 ‘上平聲四支’韻目に 속하는 글자들로 압운했다.¹⁶⁾ 매선생은 전한 말기의 매복(梅福)이다.¹⁷⁾ 『한서(漢書)』 권

16) 張晩, 「題梅先生碑陰」(己丑會試入格), 『洛西集』 卷之一 程式詩 ; 장만장군기념사업회, 『낙서집 번역본』, 2018, pp.107-362.

17) 한나라 성제(成帝) 때 왕황후(王皇后) 동생인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이 정권을 농단하자 경조윤(京兆尹) 왕장(王章)이 왕봉을 비판했다가 죽임을 당한 후, 왕씨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났다. 매복은 상소를 올려, “술개와 까치가 해를 당하면 어진 새는 더욱더 멀리 날아가고, 어리석은 자가 죄를 입게 되면 지혜로운 선비는 깊이 숨어 버립니다.[鵲遭害, 則仁鳥增逝. 愚者蒙戮, 則知士深退.]”라 하고, “외척의 권세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 형체를 보지 못하시면 그 그림자를 관찰하기 바랍니다.[外戚之權日以益隆, 陛下不見其形, 願察其景.]”라고 했다. 왕망(王莽)이 제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처자도 버리고 홀로 홍예산(洪崖山)에 들어

67에 「매복전(梅福傳)」이 있다. 이 「매복전」에 “진 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비방에 관한 범망을 펼침으로써 한 나라에게 고기를 몰아주고, 태아짐을 거꾸로 잡아 칼자루를 초 나라에 넘겨준 꼴이 되었다.〔倒持太阿, 授楚其柄〕”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또 당나라 나온(羅隱, 833-909)이 「매선생비(梅先生碑)」를 지어, 그 글이 『전당문(全唐門)』 권896에 수록되어 전한다. 장만이 부과받은 시제는 이 비의 음기(陰記)를 작성하듯 칠언고시로 의작(擬作)하라는 것이었다. 장만은 과시이기는 하지만, 매복의 고사를 화기하면서 출처행장의 문제를 깊이 성찰했다고 할 수 있다. 4연 1단씩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清霜夜凋洞庭葉, 旅鬢初驚千丈絲. 江南何處訪梅僊, 片石無語傾空陴.
曾於青史揖清芬, 過此聊復題新詞. 生全光岳逸氣清, 澗底落落長松姿.
身當炎運屬中灰, 太阿將倒王家兒. 謙恭豈是學周公? 大漢乾坤朝暮移.
巖廊盡是肉食徒, 慷慨誰能扶國危? 孤忠寧避出位誅? 碎首丹墀臣不辭.
三封直筆凜秋霜, 一寸丹忱天獨知. 浮雲已蔽白日光, 美人還誤黃昏期.
東門雨雪正雱雱, 惠好同歸安可遲? 風塵吳市舊南昌, 姓名人間知者誰?
遺蹤還入野人傳, 古里淒涼餘舊基. 江東騷客好義人, 遠慕先生興一噫.
還將石刻表遺美, 十行瓊詞三尺碑. 文章彪炳照後人, 頂上剝落蟠龍螭.
褒公之美頌公德, 庶使後人徵於斯. 停鞭幾洒志士淚? 播詠多費遊人詩.
空山風雨幾多年? 古字半入苔紋滋. 男兒墮地重意氣, 處世行藏須得宜.
遭風至今尙起敬, 況復當時親見之? 摩挲更惜漢朝臣, 食君之祿終何爲?
衣冠投閣是何人? 地下遊魂應忸怩. 豐安道上一片石, 萬古遺芳其在茲.

맑은 서리는 밤에 동정호의 나뭇잎을 시들게 하고
나그네는 처음으로 천 발 흰 귀밑머리에 깜짝 놀라네.
강남 어디에서 매선(梅仙)을 찾으리오
한 조각 빗돌은 말 없이 빈 강둑에 기울어져 있구나.
옛적에 청사(역사서)에서 읽고 고결한 행적을 존경했으니

가서 득도(得道)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매선(梅仙)이라 불렀다. 오주(吳州)의 저자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도 한다.

지금 여기에 들어서 새로운 사(詞)를 제하노라.
천지의 정기 온전히 지녀 뛰어난 기질이 청수하고
계곡 아래 낙낙한 장송의 자태이로다.

몸이 한나라 불 기운이 재가 되어가는 때를 만나서
태아검이 거꾸로 황실의 아이를 뒤엎으려 했으니,
왕망이 겸양과 공손을 어디 주공에게서 배웠던가
위대한 한나라의 건곤천지가 조석간에 바뀔 판이었다만,
암랑(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고기 먹는 자들이었으니
강개한 인물 그 누가 위태로운 국가를 부지할 것인가.
외로운 신하가 어찌 직분 넘었다는 주살을 면하려 하라
대궐 붉은 섬돌에 머리 췌어 죽는 일도 사양 앓으니.

세 번 봉하여 올린 상소의 직필이 서릿발처럼 매서워라
한 조각 붉은 정성은 하늘만은 홀로 알리라.
뜬 구름이 이미 해의 빛을 가렸으니
미인(천자)은 도리어 황혼의 시기라고 오인하셨으니,
동문에 눈이 한창 부슬부슬 내릴 때
동호의 사람과 함께 돌아가거늘 어찌 더디 굴라.
풍진 가득한 오현과 옛 남창 땅에서
선생의 이름을 인간세계에서 알리 누구인가.

남긴 자취는 도리어 야인의 전기(傳記)에 들어갔고
옛 동리는 처량하게 옛 터만 남아 있는데,
강동의 시인 나은은 의리를 좋아하여
멀리 매 선생을 흠모하여 탄식을 발하고는,
다시 석각을 하여 끼치신 미덕을 표시하려고
열 줄 아름다운 문사(文詞)를 삼 척 비석에 새겼으니,
문장이 빛나고 훌륭하여 후세 사람을 비추니
정상은 떨어져나갔고 이수(李守)는 파리 뜬 모습이로다.

공의 아름다움을 포창하고 공의 덕을 칭송하여
후인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징험하기를 바랐으니,

말 채찍 멈추고 몇 사람이나 지사의 눈물을 흘렸던가
가영이 전파되어 나그네 시들을 많이 허비했구나.
빈 산에 비바람은 몇 년을 뿌렸던가
오래된 글자들이 옷자란 이끼 속에 반나마 들어가 있구나.
남아는 세상에 태어나면 의기를 소중히 여겨
출처행장(出處行藏)을 적의하게 해야 하는 법이로다.

끼치신 풍모가 지금도 공경심을 일으키거늘
하물며 당시에 몸소 그 분을 본 사람들의 경우예라.
비석 어루만지며 한나라 조정 신하들을 다시 애석히 여기나니
군주의 녹봉을 받아먹고 끝내 무엇을 했던 말인가.
양웅(楊雄)처럼 누각에서 투신한 의관 사대부들은 또 누가 있었나
지하에서 떠도는 영혼이 응당 부끄러워하리라.
풍안(현 절강성 浦江縣) 가는 길의 한 조각 빗돌이여
만고토록 끼친 향기가 바로 여기에 있도다.

③ 金尙憲, 『文谷集』 卷7 科體詩 二首, 「嗚呼島吊田橫」(乙酉), 「藏史名山」

김상헌(1629-1689)은 1646년(인조 24) 18세의 나이로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51년에 23세로 알성(謁聖) 문과(文科)에 장원 급제했다. 그 후 1656년(효종 7) 문과 증시에 급제하고 정언(正言)과 교리(校理) 등의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이조 정랑(吏曹正郎)과 대사간(大司諫)에 올랐으니, 이미 20대에 당상관이 되었다. 그런데 「오호도조전횡」은 을유년 즉 1645년에 지은 것으로, 김수항이 「오호도」를 대제학 이식(李植)에게 올리자 이식이 몹시 칭찬하고 곁에 있는 손님을 돌아보며, “이는 근래의 과체(科體)를 익힌 자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했다고 한다.¹⁸⁾ 이

18) 『農巖集』 卷25 「先集跋」, “又作「嗚呼島」詩, 質于大學士澤堂李公, 澤堂尤稱善, 顧謂其客曰: ‘此非近世習科體者所能爲也. 又於額試, 取以置冠首, 呼前謂曰: ‘觀所爲詩, 迥脫時俗科臼, 可賞. 宜更肆力爲古歌詩.’ 他日又亟稱於人曰: ‘明年司馬試, 須得此子爲壯元, 可洗科場之陋.’ 已而竟如其言.”

시는 군불견체로 이른바 행권(行卷)의 시였음을 알 수 있다. 단, 의미단락으로는 3구 6고의 형식인 듯하다.

嗚呼島嗚呼島, 嗚呼之號胡爲乎?	01
田橫之徒死此島, 遂令此島名嗚呼.	02
一片孤島千載下, 夫何使我起長吁?	03
田橫義氣今古稀, 田橫之客天下無.	04
齊人一自歌松柏, 臨淄卽墨不復都.	05
六王旣畢四海一, 秦皇虎視黎元愚.	06
望夷宮中失其鹿, 天下共逐爭馳驅.	07
有媼之後將復育, 崛起壘畝王一隅.	08
兄弟三人遂更王, 誓雪先恥安寔區.	09
無端全齊七十城, 遽誤高陽一酒徒.	10
烹儒一入海島邊, 屈身肯向漢庭趨?	11
漢使東來傳帝命, 來則王侯否則誅.	12
此日北面寧不愧? 始與漢王同稱孤.	13
尸鄉亭下薤露晞, 一死還與二客俱.	14
島中有客五百人, 同死之志終不渝.	15
還如魯連蹈東海, 却似首陽于嗟殂.	16
若非平生得土心, 信義安得如是孚?	17
當時一士亦足王, 奈何未保千金軀?	18
雖云顛沛亦何傷? 萬古清風立懦夫.	19
嗚呼之名傳至今, 過客到此皆踟躕.	20
我今弔古酹以文, 想見其人涕沾濡.	21

君不見世上紛紛輕薄兒, 翻覆雲雨在斯須. 22

「藏史名山」이 병술년 과장에 제출한 과시였을 듯하다. 그런데 평측교호법(2-4-6부동)이나 염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시체의 한 글자를

제4연의 압운자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단, 시제의 한 글자인 史자를 제1연의 압운자로 사용하고 일운도저한 것이라든가, 의미상 3구 6고의 단락을 이룬 것으로 보아, 과제시의 일정한 규칙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仲尼絕筆於獲麟, 百世之下無良史. 01

측평측평측평측평 측측평측평평측

填典之書秦火焚, 皇王事跡俱燼燬. 02

평측평평평측평 평평측측평측측

惜哉左狐不復得! 筆削誰能遵聖軌? 03

측평측평측측측 측측평평평측측

遙遙華胄祖重黎, 周太史後司馬氏. 04

평평평측측평평 평측측측평측측

流風不泯厥緒綿, 祖傳其孫父傳子. 05

평평측측측측평 측측평평측평측

龍門降生豈偶然? 自在孩提已識字. 06

평평측평측측평 측측평평측측측

二十發軔作遠遊, 東西南北窮山水. 07

측측측측측측평 평평평측평평측

自此添得壯藻思, 冥搜萬古通玄理. 08

측측평측측측측 평평측측평평측

周南留滯固所惜, 執手遺訓猶在耳. 09

평평평측측측측 측측평측평측측

火急著書紹先志, 筆法仰承麟經旨. 10

측측측평측평측 측측평평평평측

起于五帝至漢代, 表志傳紀爲終始. 11

측평측측측측측 측측평측평평측

首贊明王與誼辟, 次述賢臣及義士. 12

측측평평측측측 측측평평측측측

海外蠻夷戎狄事, 一一昭然備于此. 13

측측평평평측측 측측평평측평측

書成更謀不朽地, 遂將藏去名山裏. 14

평평측평측측측 측평평측평평측

緹巾華置十襲芸, 簡編不容蟲鼠毀. 15

평평평측측측평 측평측평평측측

定知山靈煩護呵, 鬼神環擁風雨避. 16

측평평평평측평 측평평측평측측

山之崩兮史可滅, 此篇壽與茲山似. 17

평평평평측측측 측평측측평평측

世代變遷山依然, 其書尙存其人死. 18

측측측평평평평 평평측평평평측

其人雖死袞鉞在, 亂臣賊子無敢起. 19

평평평측측측측 측평측측평측측

嗚呼! 亂臣賊子滿天下, 如今誰識春秋義? 20

평평 측평측측측평측 평평평측평평측

장만과 김상헌의 과체시를 보면, 선조-인조 연간의 과체시는 18-22행 남짓의 고시이되, 시의 구성에서 3구(연) 1단의 단락 구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시는 조선 초에는 배울십운시 형태로 시험되다가 1450년대부터는 ‘고시’도 선택 과목이 되었고, 『경국대전』 반포 즈음에 ‘고시’로 시험 과목이 확정된다. 배울십운시는 당나라 시율시(試律詩)와 흡사했고, 고시는 영사고시(詠史古詩)와 유사했다. 그런데 출구 첫2자에 평성을 놓고 이를 반복하는 평측법이나 7언 18구, 문장형 제목에 과제, 포서, 회제, 회화가 적용되는 시체가 등장한 것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¹⁹⁾ 언제부터인가 3구 6고 체제를 기본 결구로 갖는 작품들이 등장하여 이것이 정식(定式)으로 인식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정조의 명으로 과시에 입성운도

19) 이상욱 씨는 16세기에 이 형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쓰이게 되었다.

2. 과문편집본

현재 공사립 도서관에는 유생(幼生)들이 과문을 연마하기 위해 참조했던 과문 편집본들이 상당히 많이 전한다. 이를테면 조선 전기에는 책문 모음집인 『어시책(御試策)』, 『속문범(續文範)』, 『전책정수(殿策精粹)』나 『동책정수(東策精粹)』이 활자본으로 간행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실용적인 작법을 제시하는 『책문준적(策文準的)』이 나왔다. 『어시책』은 원나라 제과의 책문 답안을 모은 것이고,²⁰⁾ 『속문범』은 명나라와 조선의 책문을 모은 것이다.²¹⁾ 한편, 조선후기의 정조는 문체순정 정책의 일환으로 『임헌공령(臨軒功令)』을 편찬하게 했다. 『임헌공령』은 과제시를 분류하여 실었는데, 과장의 시권만이 아니라 문신의 응제 시권도 분류하여 실었다.²²⁾ 정조 시대에는 문신의 제술과 성균관 유생의 제술과 관련해서 다음 책들을 엮었다.

『임헌공령(臨軒功令)』: 국왕이 주관한 응제를 비롯하여 예조와 성균관 및 각도의 도회(都會)에서 지어진 과문(科文) 중 우수한 것을 연대순으로 엮은 책이다. 처음에는 예조에서 편찬하다가 뒤에는 규장각에서 담당했다. (『弘齋全書』

20) 윤병태, 「『御試策』과 朝鮮 前期의 小型 活字 印本-反「元刊銅活字本」考-」, 1997.11 ; 申万里, 『元代科舉新探』, 北京 : 人民出版社, 2018.

21) 심경호, 「『續文範』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총서 10 『續文範卷之二』,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9.2.27, pp.156-163.

22) 이를테면 정조는 재위 13년(1789, 기유) 3월 28일(을유) 응제 시권을 고하하고, 그 우수답안을 『임헌공령』에 실게 했다, 당시 「장안 시장 술집에서 잠들어 있었네[長安市上酒家眠]」를 시제(詩題)로 삼아 칠언백운고시(七言百韻古詩)를 보였는데, 한만유(韓晩裕)가 거수, 우부승지 이서구(李書九)와 동부승지 신기(申耆)가 지차였다. 정조는 하교하길, “100운 장편을 한나절 만에 그 자리에서 완성했는데 구법에 잘 들어맞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주제 의식이 수미관통되어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상으로 내리는 내하 물품은 친히 줄 것이다.”라고 하고, 원래의 시권을 내각에 보내 『임헌공령(臨軒功令)』에 실고 『은대시첩(銀臺詩帖)』에도 기록하게 했다.

卷184 羣書標記6 命撰2 『臨軒功令』 정조 즉위년(1776)부터 고종 11년(1874)까지 74책의 필사본이 『임헌제충(臨軒題叢)』과의 합본으로 규장각(청구기호:奎1143)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B13647-5-1-4)에도 4책본이 소장되어 있다. 각 응제문 말미에 해당 문장이 작성된 연도·시명(試名)·장소, 작자의 성명·신분·점수가 소자 쌍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헌제충(臨軒題叢)』: 제술 시험의 시제(試題)를 문체별로 기록하고 각 제목 아래에 언제 무슨 시험에 쓰인 것인지를 밝힌 책이다. 현재 1800년·1811년(1책), 1827년·1828년(2책), 1855년(4책) 치러진 제술에 관한 기록을 적은 3책의 낙질 필사본이 『임헌공령(臨軒功令)』과 합본으로 규장각(청구기호:奎11437)에 소장되어 있다. 4책의 『臨軒題叢』과 74책의 『臨軒功令』의 合本으로 筆寫本이며 『臨軒題叢』 제3책이 落帙이다. 編者는 미상이나 筆體로 보아 歷代의 여러 사람이 계속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임헌제충』은 제1책이 1800년·1811년, 제2책은 1827년·1828년, 제4책은 1855년(哲宗6)의 응제문 제목을 문체별로 수록했다.²³⁾ 『임헌공령』(규장각 소장)은 정조 원년인 1777년의 증광문과초시 과문부터 수록했다. 각 應製文마다 연대, 試名, 장소와 함께 입격자의 성명, 生員·進士童蒙幼學 등 身分, 次上·次下 등 點數를 밝혀 두었다.²⁴⁾

『육영성취(育英姓彙)』: 서유구가 왕명에 의해 응제 시험의 방목을 성씨별로 분류하고, 관향세(世)파(派) 및 그동안 시험에 합격한 사실 등을 갖추어 기록한

23) 『臨軒題叢』 1책: 賦·表·詔·銘·頌·箴·律·賦·詩·古詩·律詩·絕句·啓序·排律·策·制·論·義·說·贊·奏·文·答·綸 順으로 試題目을 차례로 싣고 각 제목 아래에 언제 무슨 試驗의 題目인지 밝혔다. 2책: 賦·表·書·詔·銘·頌·詩·古詩·律詩·排律·絕句·序·論·判·跋·上·疏·草·記·婚·書·上·樞·文 順으로 試題를 싣었다. 3책: 落帙. 4책: 賦·詩·表·疑 順으로 試題를 차례로 싣었다.

24) 『臨軒功令』 1책: 1777년 2월 增廣文科初試의 一所에서 幼學 鄭斗榮이 지은 執策을 비롯하여 慶尙道, 全羅道, 忠清道, 平安道 등의 增廣文科 策 16권. 2책 壬寅年 李庚運 등 殿策, 3책 賦, 4책 表, 5책 頌, 6·7책 執策, 8책 賦, 9책 表, 10책 科體詩, 11책 執策, 12책 殿策, 13책 詩, 14책 執策, 15책 擬, 16책 賦, 17책 詩義, 18·19책 詩, 20책 疑, 21책 問, 22·23책 經義, 24책 賦, 25책 詩, 26·27책 問, 28책 銘, 29책 問, 30책 論, 31책 七言詩, 32·33·34책 賦, 35책 表箋, 36책 銘, 37책 論, 38책 排律, 39책 賦, 40·41책 表冊, 42책 論, 43책 銘, 44책 經義, 45책 論, 46책 銘, 47책 經義, 48책 表, 49책 銘, 50책 論, 51책 銘, 52책 名, 53책 表, 54책 經義, 55책 銘, 56책 詩, 57책 問, 58책 表, 59책 問, 60·61책 經義, 62책 策, 63책 詩, 64책 論, 65책 賦, 66책 疑, 67책 表, 68책 問, 69·70책 詩, 71책 論, 72책 賦, 73책 表, 74책 問·經義 등.

책이다. 초본은 모두 110개 성씨, 총 29권으로 정조 즉위년(1776)부터 기록되었다.²⁵⁾ 『정조실록』에 따르면 초본은 정조 17년(1793) 12월 20일 완성되었는데, 「군서표기」에는 본문의 기록 범위를 병신년(1776)부터 을묘년(1795)까지라 하여 기록의 하한을 늘렸고 또 검색을 위한 운표(韻表) 4권과 응제 사실 1권이 추가해서 34권이라 했다. 현전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어고은사절목(御考恩賜節目)』: 재위 18년(1794) 3월 1일 정조가 성균관 응제 시험의 어고(御考)를 받은 자들에 대해 특별히 어고의 회수만큼 문과 회시에 직부(直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여, 내각에서 절차를 정한 절목이다.²⁶⁾

『태학응제어고안(太學應製御考案)』: 성균관의 응제 때 어고를 내리는 방식을 규정한 것인 듯하다. 이만수(李晩秀)의 『극원유고(履園遺稿)』 권6, 「사홀집(賜笏集) 절목(節目) 재천절목(齋薦節目)」에 “『태학응제어고(太學應製御考)』를 기준으로 수석·2등·3등의 석차를 매긴다.”라는 말이 보인다. 현전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필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중종조까지 17명의 우리 문인-학자들이 쓴 ‘論류 25편을 한데 모은 목활자본을 1책 지니고 있다. 앞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서명을 『동국논선(東國論選)』이라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²⁷⁾ 선정된 작가들의 활동 시기와 서적의 版式 등을 근거로 할 때 그 간행 시기는 중종 말·선조 초로 추정된다. 또 이 전적은 ‘論류 선집본’으로서는 고본(孤本)이다. 또 이 책에 수록된 작가나 작품 가운데는 개별 문집이나 다른 총집류의 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더구나 후대의 역사에서 이른바 사장파(詞章派)로 폄하되어 전혀 되돌아보지 않게 된 심정(沈貞) 및 그 당인(黨人)인 이항(李沆), 영남학자들의 비난을 샀던 충청 문인 곽시(郭詩)의 글이 들어 있다. 이 책에는 약자(略字)를 많

25) 『弘齋全書』 卷11 序引4 「翼靖公奏藁典禮類叙」;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6 命撰2 ‘育英姓彙’.

26) 규장각에서 작성한 1책 8장 필사본이 규장각(奎9852)에, 1책 12장 필사본이 장서각(K2-3547)에 소장되어 있다. “36.4×28cm 卷末:乾隆五十九年三月日. 印記: 摛文院印.”

27) 심경호, 「木活字本『東國論選』에 관하여」, 『季刊書誌學報』 11, 한국서지학회, 1993.12, pp.130-153 ; 심경호, 『국문학연구와 문헌학』, 태학사, 2002, pp.167-191.

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이나 경저(京邸)에서 간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동국논선’의 본문 첫 장도 낙장인데, 내용으로 보아 이곡(李穀)의 「조포충효론(趙苞忠孝論)」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곡의 이 글은 문집에 전하고 『동문선』²⁸⁾에도 들어 있다. 『동국논선』에 수록된 작품들의 撰者와 제목을 일람하고 현전하는 문집이 있으면 대조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1	李 穀	1298-1351	趙苞忠孝論	『稼亭集』과『東文選』에 수록
2	金時習	1435-1493	爲治必法三代	『梅月堂集』文集 제18권 수록. 『續東文選』 미수록.
3	黃 瑋	1464-1526	孔顏所樂何事	『稼亭逸稿』에 수록(?)
4	劉 瑾		項羽不渡烏江	
5	李 沆		斬丁公	
6	李 沆		渝金櫃盟	
7	沈 貞	1471-1531	不冠不見汲黯	
8	尹 衢	1495- ?	爲義帝發喪	『橘亭遺稿』7에 「漢高祖爲義帝發喪論」
9	尹 衢		戮防風	『橘亭遺稿』에 「大禹戮防風論」
10	沈思順		堯不誅四凶	
11	閔濟仁	1493-1549	箕子爲武王陳洪範	『立巖集』追補(1926년 追刻) 수록.
12	朴光佑	1495-1545	殺鉤弋夫人	『華齋集』문집 권2 수록.
13	朴光佑		洩溺儒冠	『華齋集』문집 권2 수록.
14	朴光佑		加足帝腹	『華齋集』문집 권2 수록.
15	吳世佑		蕭何不告漢王追韓信	
16	羅世纘	1498-1551	崇節義	『松齋先生遺稿』권2 「崇節義論」 (乙酉庭試初試魁)
17	羅世纘		抑戒	『松齋先生遺稿』권2 「崇節義論」 (戊戌擢英試魁)

28) 盧思慎・徐居正 등 찬, 『東文選』 卷99 論.

18	羅 瀾		宋璟不賞邊功	
19	羅 瀾		周勃狄仁傑優劣	
20	李元孫		馬援不與雲臺	『無何翁集』 수록.
21	郭 詩		除肉刑	『垣庵先生遺稿』 수록.
22	郭 詩		西北人才與東南不同	『垣庵先生遺稿』 수록.
23	郭 詩		韓愈好勝	『垣庵先生遺稿』 수록.
24	朴敏中		武王不褒錄夷齊	
25	尹希聖		問禮於老聃	

『동국논선』은 科試 대비용으로 論類의 佳篇을 선별해서 편찬한 것으로, 선별된 작품 가운데는 科文의 우수작이 많이 들어 있으나, 반드시 과장에서 제출한 것이 아닌 논편도 들어 있다. 예를 들면 나세찬(羅世縝)의 「숭절의(崇節義)」는 중종 20년(을유, 1525) 정시(庭試) 초시에서 으뜸으로 뽑힌 글이고, 또 「억계(抑戒)」는 중종 33년(무술, 1538) 탁영시(擢英試)에서 으뜸으로 뽑힌 글이다. 한편 이곡(李穀)은 충숙왕 4년(1317) 제술업감시(製述業監試) 즉 국자시(國子試)인 거자과(舉子科)에 합격한 뒤 1332년(충숙왕 위원년) 정동성(征東省) 향시(鄉試)에 수석으로 선발되고 전시(殿試)에 차석으로 합격하였다. 제술업감시는 의종 8년 이후 시(詩)·부(賦)·십운시(十韻詩)·명경(明經) 중에서 택일하여 부과해 왔으므로 이곡의 「조포충효론(趙苞忠孝論)」은 과제(科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국논선』에 수록된 글 가운데 劉瑾·李沆·沈貞·沈思順·吳世佑·羅瀾·朴敏中·尹希聖 등의 글은 유일본이어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또 李穀·金時習·尹衢·閔濟仁·朴光佑·羅世縝·李元孫 등의 글은 문집에 들어 있기는 하여도 이 『동국논선』 수록문이 대교(對校)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원손(李元孫)의 「마원불여운대론(馬援不與雲臺論)」은 『동국논선』 수록본과 『無何翁集』 수록본 사이에 문자 및 포서(鋪敘)의 차이가 심한데, 문집본은 개작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이응백 님은 앞서 본 옥고에서 신광수(申光洙), 신광하(申光河),

신응연(申應淵), 김득필(金得弼), 채득순(蔡得淳) 등이 제출한 과시체(科詩體) 시권(試券)을 정서(正書)해 둔 『과문』 필사본 8책의 존재를 소개한 일이 있다. 그 가운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과시로 「지재천수변(只在蘆花淺水邊)」을 거론했다. 그 시제는 당나라 사공서(司空曙)가 지은 「강촌즉사(江村卽事)」의 “온밤 내내 바람 불어서 다 없어진대도 얇은 물가에 갈대꽃만은 남아 있으리.[縱使一夜風吹去, 只在蘆花淺水邊.]”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과시를 성균관에 있을 때인 계묘년(정조 7년, 1783)에 제작했다. 정약용은 과시 169편을 『진주선(眞珠船)』이란 책명으로 별도로 편집해 두었다.²⁹⁾ 정약용은 반제와 초계문신 때의 표전을 『열수문황(洌水文簧)』 상중하로 편집해 두고, 그 자서(自序)에서 표전 문체의 형식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³⁰⁾ 『진주선』에서는 그와 같은 신랄한 서문을 붙여두지는 않았으나, 과시에 대해서도 그 형식성을 비판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진주선』 수록의 글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분운(科詩分韻)』 12책 가운데 제7책(午) ‘先韻’ 수록의 글을 비교하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글자나 문단구성을 보면 『과시분운』이 대개 옳다. 단, 『과시분운』의 ‘浙閩’과 ‘北過’는 『진주선』의 ‘閩浙’과 ‘北涉’이 옳다.(괄호 속에 『과시분운』의 표기를 밝혔다.)

畫家愛作漁村圖, 吳淞一幅并刀剪.
 측평측평평평평 평평측측평평측
 於身寡累迹始閒, 與物無爭心亦善.
 평평측측측측평 측측평평평측측
 空[孤]舟夜放[泛]白鷗波, 一色蘆花寒不辨.
 평 평측 측 측평평 측측평평평측측

29) 『與猶堂全書補遺』 ○眞珠船. 정본에 따르면 ‘계축년, 을묘년’의 것부터 계묘년까지의 시기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계축년과 을묘년은 각각 신축년과 임인년의 잘못된 듯하다.

30) 『與猶堂全書補遺』 ○洌水文簧 上中下(상 149편, 중 154편, 하 168편)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12,

翁家〔斯翁〕舴艋小如梭, 爲是漣漪秋水淺.

평평 평평 측측측평평 측측평평평측측

蘋花菱葉晚相隨, 溪鱖江豚時復胃.

평평평측측평평 평측평평평측측

漁家終古少風波, 汎〔泛〕往浮來聊自遣.

평평평측측평평 측 측 측평평평평측측

回看海賈萬斛船, 滿載金珠臨水錢.

평평측측측측평 측측평평평측측

南衝鱷浪度閩浙〔*浙閩〕, 北涉〔*過〕鼉〔鯨〕濤踰漢沔.

평평측측측평측 측평 측측 평 평평측측

沙灣百丈下碇〔碇〕深, 海寇來時防夜□〔燹〕.

평평측측측측 측 평 측측평평측측 측

吾家本無繫〔係〕船法, 一葉輕舺嗟不腆.

평평측평측 측 평측 측측평평평측측

非關由來〔曲崖〕□〔倒〕水柳, 且閣回磯經雨蘚.

평평평평 측평 측 측측 평측평평중측측

笳笳掛處睡正濃, 月落柴門寥一犬. (『科詩分韻』午 銑韻에 이 구가 없음)

평평측측측평평 측측평평평측측

山妻〔家人〕夜報鯉魚風, 或恐瓜皮隨水轉.

평평 평평 측측측평평 측측평평평측측

秋江解纜得無誤, 夜壑移舟知不免.

평평측측측평측 측측평평평측측

蘆漪〔花〕流水不沒脛, 一碧玻瓈秋色展.

평평 평 평측측측측 측측평평평측측

寒魚吹處白花飄, 宿鴈頭邊珠露泫.

평평평측측평평 측측평평평측측

吾舟只在阿那邊, 一似〔任〕浮萍〔輕風〕舒復捲〔卷〕.

평평측측평평평 측측 측 평평 평평 평측측

寧愁半渡六鷁退, 卻〔却〕任三更孤鶴踐.

평평측측측측측 측 측 평평측평평측측

樵青小兒[溪]莫謾憂[愁], 物外閑情知者鮮.

평평측평 평 측측평 평 측측평평평측측

山居亦有此樂否, 草中牛羊宵不圈. (『科詩分韻』 午 銑韻에 맨 아래 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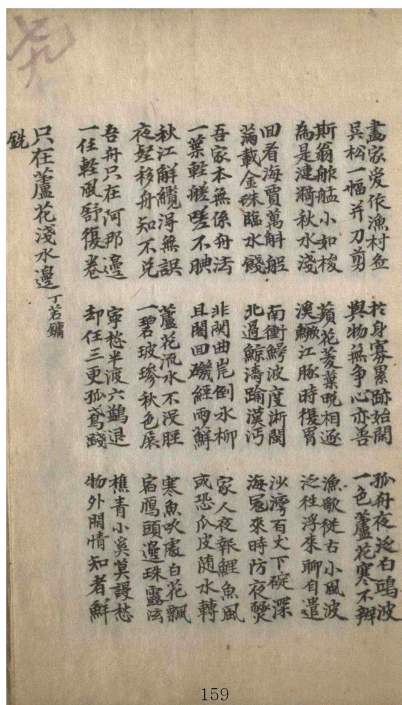
평평측측측측평 측평평평평측측

정약용의 이 과시를 보면 압운 법은 정확하게 지켰고, 홀수구를 평기(平起)하는 일관성을 유지했으나, 구중의 2-4-6부동 원리는 지키지 않은 곳이 있다. 구중 2-4-6부동 원리를 어느 정도 지키지 않아도 ‘허용’된 것이지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

과표를 집성한 자료도 국내 공사립 도서관에서 여럿 확인된다. 필자는 장서각 소장 『표수表藪』에서, 1690년(숙종 16년, 경오) 11월 정시(庭試) 문과에서 三中의 성적으로 장원한 한명상(韓命相, 1651년=辛卯生)의 예를 소개한 바 있다.³¹⁾ 한명상의 과표는 23구이다. 압운은 하지 않고, 평측의 교환인 가새법을 지켰다.

進厥良簡厥修方恢任用之術, 見其政知其學盡降微拜之音.

측측평측측평평평평측평측 측평측평평측측측평측평평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분운(科詩分韻)』 12책 가운데 제7책 午 ‘先韻’ 수록의 정약용 시권

31) 심경호, 「한국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체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 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3, pp.225-300.

嘉乃不忘, 在帝之簡.
 평측측평 측측평측
 欽鼎新庶政, 器使群工.
 평측평측측 측측평평
 任千石之惟良與我共理, 點小善者率錄立賢無方.
 측평측평평평측측평측 측측측측측측평평평
 顧惟朱熹之洪儒, 早登明庭之鶚薦.
 측평평평평평평 측평평평평평측

표제는 「송 나라 우상(右相) 왕희(王淮)가 주희(朱熹)의 황정(荒政)은 그의 학문을 시행한 것이니 마땅히 관직을 승급시켜 부르기를 청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상 왕희가 처음에 주희를 절동제거에 천거한 것은 주희에게 중앙 관직을 주지 않으려는 계책이었다. 주희는 1181년(순희 8) 8월 절동제거에 임명되어, 10월에 부임했으나, 그 이듬해(1182) 6월 8일에 주희는 왕희를 비난하는 서찰을 내었다. 7월에 주희는 지태주(知台州) 당흥정(唐興正)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어 주차(奏劄)를 올려 탄핵하게 된다. 이때 왕희는 당흥정의 인척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겼다. 주희는 봉장(封章)을 여섯 번이나 올렸다. 당흥정은 강서 제형(江西提刑)에 제수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 왕희는 당흥정의 강서 제형을 박탈하고 주희에게 주었다. 주희는 나아가지 않았다. 1183년(순희 10) 6월 5일 감찰어사(監察御史) 진가(陳賈)는 왕희에게 붙여 「도학은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흠치니 배척하기 바랍니다〔道學欺世盜名 乞擯斥〕」 상소를 올렸다. 이 사건은 이후 주희의 친지나 문생 등 수많은 선비가 학금(學禁)에 걸려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전조였다. 다만, 왕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희를 부득불 주희를 정부에 들일 수밖에 없었다. 주희와 왕희는 처음부터 ‘빙탄지간(氷炭之間)’이었으며, 왕희는 주희의 숙적이었다. 이것을 보면 과표는 허구의 사실을 표제로 삼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과거의 대책문 공부를 위해 우수한 답안을 모은 자료를 집책(執策)이

- 강세귀(姜世龜, 1632-1703) 策問 三上
 조위봉(趙威鳳, 1621-1675) 策問 三中
 홍도(洪觀, ?-?) 「極」 1660(庚子) 增廣試 二上
 우창직(禹昌積, 1623-1693) 「極」 1660(庚子) 增廣試 三上
 조윤석(趙胤錫, 1615-1664) 「氣」 三上
 이단석(李端錫, 1625-1688) 「曆法」 1650(庚寅) 增廣試 三中
 김명석(金命碩, 1623-?) 「曆法」 1650(庚寅) 增廣試 三上
 윤곤(尹坤, ?-?) 「寶」 二下
 심재(沈梓, 1624-1693) 「梅花」 二中
 이시성(李時省, 1598-1668) 「梅花」 二上 魁
 박수현(朴守玄, 1605-1674) 「詩」 三上 魁
 민점(閔點, 1614-1680) 「杖」
 권대재(權大載, 1620-1689) 「算數」
 홍위(洪葦, 1620-1660) 「儒教」 1650(庚寅) 增廣試 二中
 이만웅(李萬雄, 1620-1661) 「儒教」 1650(庚寅) 增廣試 二下
 미상 「窮理」
 권오(權悟, 1602-?) 「道統」
 미상 「治亂」, 1644(甲申) 式年試 二上
 조종저(趙宗著, 1631-1690) 「駢儷」 二下 魁
 채정린(蔡廷麟, 1632-?) 「駢儷」 三上
 유현(兪櫨, 1617-1692) 「鹽鐵錢帛」 1651(辛卯) 式年試 二下
 미상 「感應」
 김령(金垚, 1577-1641) 「事業」, 1615(乙卯) 式年試 三上
 미상 「名節」
 정뇌경(鄭雷卿, 1608-1639) 「蒙養」 二中
 미상, 「鹽戒」
 미상, 「漁」
 윤선도(尹善道, 1578-1671) 「春」, 1628(戊辰) 別初試 魁
 윤이원(尹而遠, ?-?) 「春」 1628(戊辰) 別初試 二下
 황상(黃床, ?-?) 「史」 上之下
 조지세(趙持世, ?-?) 「琴」
 미상 「墓碑」

미상 「謙」

이동표(李東標, 1644-1700)의 책문 일부

이 가운데 정두경이 답한 「병가장기」 책문에 대해서는 윤선도(尹善道)의 대책도 있어서, 『고산유고』에 실려 전한다.³³⁾ 『고산유고』에는 책문도 함께 실려 있다. 앞으로 문집이나 단행본과의 대조를 통해 『집책』 수록 책문의 작자, 제작 시기 등을 고증할 필요가 있다.

과문의 답안집은 근래에도 정리되어 나왔다. 1998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의 서광문화사에서 동산(東山) 최봉수(崔鳳洙)는 『옛날의 科擧答案集』을 간행했다.³⁴⁾ 이 답안집에는 도검 소재의 책문과 대책문인 「검책문(劔策問)」과 「검대책문(劔對策文)」이 실려 있다.³⁵⁾ 이 실명씨의 「검대책문」은 정두경(鄭斗卿)의 「삼인검에 대한 노래[三寅劔歌]」와 기상이 통한다.³⁶⁾

「劔策問」. 問: 劔者, 防身之長物, 戰陣之利用. 匣有騰空, 龍虎之吟・鑄得太阿, 能遏晉鄭之侵, 其詳可得聞歟? 漁父之辭劔, 季子之掛劔, 朱雲之請劔, 馬武之彈劔, 其旨之異同, 亦可歷指歟? 拔憑軒之鞘而作歌者誰歟? 贈鴻家之寶而勉人者誰歟? 紫氣衝於斗牛, 竟合延津, 青龍突於賊陣, 若招銅鐵, 其靈異亦可有言歟? 或有宰相劔, 或有將軍劔, 苟得其劔, 人非將相之器, 而亦可將相歟? 今者, 西表未雪, 北顧方急, 此正烈士忠臣用劔之秋, 而未聞有一人張空拳冒白刃, 爲國願死之意者, 我國之

33) 『孤山遺稿』 卷6 上 別集, 策問.

34) 최봉수(崔鳳洙), 『옛날의 科擧答案集』, 서광문화사, 199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pp.71-85.

35) 趙赫相, 「조선 후기 刀劔 素材 科擧 答案 사례에 대한 一考察 - 「劔策問」과 「劔對策文」을 중심으로 - 」, 『東方漢文學』 83, 東方漢文學會, 2020, pp.361~384. 이 논문에 따르면 “호란을 전후로 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劔策問」과 「劔對策文」이라고 한다. 朴長遠의 『久堂先生集』에 수록된 「解劔懸墓論」을 함께 거론했으나, 이것은 문체가 다른 것은 물론, 주제도 다르다.

36) 『東溟集』 卷9 七言古詩 「三寅劔歌」.

利器, 不及於古歟? 抑或有利器, 而不得其用歟? 何以則劔非徒劔, 而有洗劔青海之功歟? 請磨十年之劔, 必有遊刃之論, 願聞之.

「劔對策文」. 對: 愚也甚貧, 有一劔削候耳. 少學書不成, 晚而好此. 最上, 斬單于, 洗青海, 雪國家羞恥. 其次, 從狗屠, 入燕市, 爲知己死. 不然則倚之崆峒, 磨勵而待之. 今執事當朝廷用武之日, 策書生論劔之設, 愚請以素講之術, 爲執事獻焉. 【虛頭】

竊謂尊收之神, 假手於太冶, 躍而出者爲劔. 劔者, 六氣之英・五行之精也. 變動猶鬼神, 不可端倪. 上可以決浮雲, 下可以截地氣. 水可以剪鯁鯢, 陸可以斬犀象. 幽可以伏魑魅魍魎, 明可以斬妖腰亂領. 在人爲防身之物, 在國爲戰場之利, 劔之用亦大矣. 是以志士平居, 悲歌慷慨, 忿恨愉佚, 酣醉無聊, 不平有動於心, 則必於此焉發之. 壯士臨陣, 曠日揚臂, 斬將褰旗, 前蒙矢石, 不避湯火之難者, 亦莫不爲此之任耳. 名雖曰一人敵, 亦不可小其器也. 雖然, 是物也, 旣不能自用, 又不能獨成, 掘之泥沙, 不能自出, 藏之匣鞘, 不能自拔. 上下低仰, 一隨於人, 而能使勇者勇, 不使恟者勇, 能使强者强, 不使弱者强. 用之大則大, 用之小則小, 或用之勝, 或用之敗. 然則劔固未易得, 用劔亦未易也. 故古語曰: ‘莫耶・干將, 不在於器, 得人而已’, 其在劔乎! 【中頭】

請白之. 龍吟匣中, 坐制四方者, 顓頊之騰空, 一揮城上, 流血千里者, 楚子之太阿, 噫! 其亦靈矣. 寶刀值百金, 却之不受, 空山一抔, 解而懸之. 急難而取, 有同商賈, 中心之旣, 不問幽明, 則義哉楚江漁父, 嗚呼有吳延陵,³⁷⁾ 斬一介妄臣頭, 願少借得五千橫行, 思欲一鳴. 噫! 剛腸疾惡, 不避天威, 低掌論兵, 心在伊吾, 則朱雲古之遺愛, 馬武不是庸人. 憑軒拔鞘天亦爲齊者, 杜少陵之詩也.³⁸⁾ 先君之寶以勗他人者, 李節度之贈也. 文人翰墨, 聞語古人, 一時之言, 不足爲後世傳也. 斗牛墟間, 冤氣尚赤, 而延平水上, 神物會合, 百萬軍中, 勢若飛電, 而鋒鏑及處, 銅鐵作聲, 吾安知好事之龍學变化而來乎? 至若劔之名, 有宰相者, 有將軍者, 謂之將相者得此則可謂之將相, 不得此者將相, 則愚未知之信也. 【逐條/軸條】

嗚呼! 古人已矣, 其唯今乎! 何代無恥? 莫若我也. 爾忘胡人之辱我國乎? 城下之

37) ‘嗚呼有吳延陵’은 공자가 일찍이 계찰의 묘비(墓碑)에 “아, 오나라 연릉 군자의 묘이다.[嗚呼! 有吳延陵君子之墓.]”라는 10자를 썼다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38) 두보의 「형남병마사태상경조공대식도가(荊南兵馬使太常卿趙公大食刀歌)」에 “짧은 옷 입은 장사가 머리카락이 범 털 같은데, 난간에 기대어 칼을 뽑아 하늘까지 높아라.[壯士短衣頭虎毛, 憑軒拔鞘天爲高]”라고 했다

盟，古人所恥，再犯之急，朝暮可待。君王按劔而坐，百姓枕戈而眠，此正志士忠臣，喟然咨嗟，慨然奮起，提三尺劔，出萬死計，建非常勳策之秋，而上自元戎，下至軍卒，各有全軀保妻子之心，開鳴鑼，則股慄而膽掉，棄甲而曳兵，未聞有蹈白刃大刀頭，卓然有大丈夫者。數千里東方，曾無一介義人耶？然則我國之劔，不及於古歟！所謂騰空太阿，紫氣青龍，莫耶干將，蓋有之矣，人不得其用歟！【當今】

嗚呼劔者，一兵器耳。可以爲利器，可以爲凶器，可以爲虛器。今有人以劔殺賊，則可以殺，而賊奪之，反殺其人，則人亦能殺。雖以此成功，乃人之功，非劔之功。雖以此取敗，乃人之過，非劔之過。是以以騰空之劔，待顓頊而名焉。太阿之劔，待楚君而名焉。宰相之劔，待蕭何而爲用。將軍之劔，待韓信而爲用。自古不患不得劔，患不得人耳。執事之所謂古之良劔者，愚未知如何？有血氣足以自運，有智謀足以自用耶。然則今之劔亦古之劔，執事所謂今之劔不可用者，愚未知如何？其鋒不能擊人，其鏑不能斬人耶？不然則今之劔亦古之劔，用不得其用而歸罪於劔曰：‘東方無良劔’，其真無劔耶？其真不得劔耶？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兵也’？【設/設弊】

誠能得善用之人，磨以燕然之石，淬以滌支之波，嗚乎！薊北之野，倚乎！紫塞之傍，則直之無上，舉之無前，匈奴之頭，可致北關之下，而聖上之憂，從此解矣。然後藏之武庫，永示不用，則愚安知千載之後，百世之下，稱今日劔者，亦如今之稱古之劔乎？嗚呼！劔固有待而然耶？劔所待者，必有所待而然耶？【揀措/救弊/揀弊】

有用劔者，有用用劔者。執事好劔，請以劔喻。夫豐城之劔，氣通星辰，可謂神矣，見水踊躍，可謂靈矣，而潛其鋒幾百年，日月累千萬之過，而人莫之知也，一朝雷公，掘而出之，當時服其用，後世稱其名。向使雷公不出於其時，不過於其地，則安保其必得也？此乃土之所在，良工之所棄也，而爲天下名器，然則聖王之所棄者，獨不足厚國家，而有人於此，以劔論之，雖不及於此，比之鉏刀則銛耳。十年磨劔，霜刃未試，彈其銛，作歌曰：‘長銛歸來乎，莫我知，長銛歸來乎。老將至。’若此者，古所謂善用劔者非耶？平生今日，亦雷公過豐城之日也。願執事姑試之。謹對。【終/篇終】

조선후기 대책문의 짜임에 대해서는 1790년(정조 14) 경술(庚戌) 체제공(蔡濟恭)이 정조에게, 장옥(場屋)에서 역서(易書)할 때 규례를 어기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아뢴 다음 말과, 이에 대한 정조의 하비(下批)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듣자니, 근래 대과(大科)의 장옥(場屋)에서 고시(考試)할 때에 역서(易書)를 어렵게 여겨, 책문(策問)의 경우 그저 허두(虛頭)만 베껴서 들이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숙유(宿儒)의 거필(巨筆)을 간취(揀取)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면(事面, 일의 면모, 事體)으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극도로 미안합니다. 금번은 종래의 잘못을 절대로 답습하지 말하는 뜻으로, 미리 신칙하심이 어떠하신지요?³⁹⁾

채제공의 계문(啓聞)에 대해 정조는 다음과 같이 비답(批答)을 내렸다.⁴⁰⁾

軸條(逐條)以試該洽, 揀措欲觀風裁, 主司之只謄虛頭一段, 并與中頭而不見, 則寧有如許體段? 況策之爲文, 釋意專在於中頭, 中頭不見, 如畫龍不畫睛. 大抵責苟在試官, 而舉子之不注意於中頭以下, 亦屬當矯之先務, 以此先飭試官, 仍令諸生, 預各聞知. 自今科, 專力於中頭以下, 而虛頭過十行者, 無論工拙, 一切并置落科. 雖榜出之後, 卿等取來考閱, 違式者亦當拔榜, 試官論罪. 古人豈不云乎? 文體可以觀世道. 竭氣於虛頭, 是甚氣象? 予於此, 常所耿耿, 適因卿奏, 不嫌其煩復, 如是敷論. 況科名異於他科, 則文體氣象之必欲優餘, 未必不爲祈永之一助, 多士聞此, 敢不承當? 亦令下諭于掌試京試官都事.

축조(軸條/逐條)로 해합(該洽)을 시험하고, 구조(揀措)로 풍채(風裁)를 살피고자 했는데, 주사(主司)가 단지 허두(虛頭) 한 단락만 베껴서 중두(中頭)와 함께 축조도 구조도 보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체단(體段)이 있던 말인가? 하물며 책(策)이라는 글은 석의(釋意, 주제의 해석)가 오로지 중두에 있으니, 중두를 보지 않는 것은 마치 용을 그리면서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것과 같다. 대체로 그 책임은 진실로 시관(試官)에게 있으며, 거자(舉子)가 중두 이하에 우연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급선무에 속하니, 이런 내용으로 먼저 시관을 신칙하고, 아울러 제생(諸生)으로 하여금 미리 각자 알아들도록 하게 하라. 이번 과거부터는 오로지 중두 이하에 힘을 쏟아서, 허두가 열 줄을 넘는 자는

39) 『樊巖先生集』 卷30 啓 「請禁場屋易書時謬規啓」. 「聞近來大科場屋考試之際, 以易書之爲難, 策問則只令謄納虛頭云. 此不特宿儒巨筆無以揀取, 以事面言之, 亦極未安. 今番則切勿襲謬之意, 預爲申飭何如?」

40) 『弘齋全書』 卷四十三 批二 「左議政蔡濟恭筵奏批」(庚戌). 위의 주 39에 언급한 채제공의 「請禁場屋易書時謬規啓」 아래에도 전제되어 있다.

글이 잘 되고 못 된 것을 막론하고 일체 모두 낙과(落科)에 두도록 하라. 비록 방(榜)을 낸 뒤일지라도 경들이 가져와 고열(考閱)을 해서 격식에 어긋나는 것은 또한 방(榜)에서 빼 버리고 시관은 논죄하도록 하라. 옛사람이 이르지 않았는가? ‘문체(文體)는 세도(世道)를 살필 수 있다.’라고 말이다. 그렇거늘 허두에서 기운을 다하니 이것이 무슨 기상이란 말인가? 내가 이 일에 대해 항상 잊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경이 상주한 일로 인하여 번거롭고 중복되는 것을 혐의하지 않고 이와 같이 유시를 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과명(科名)은 다른 과거와는 다르니, 문체의 기상을 반드시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국운의 영속(永續)을 기원함에 있어 일조(一助)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러 선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감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시험을 관장하는 경시관(京試官)과 도사(都事)에게도 하유를 하도록 하라.

고전번역원 제공의 구 번역은 이 글의 첫머리를 “시축(詩軸)의 조목으로 해박한가를 시험하고 글의 짜임새로 풍모를 살피려고 하였는데, 주사(主司)가 단지 허두(虛頭) 한 단락만을 베끼고 중간 부분까지 아울러 보이지 않으니, 어찌 이러한 법이 있단 말인가.”라고 해석했는데, 잘못이다.

과책은 시험되는 상황에 따라 집책과 전책으로 나뉘고, 내용에 따라 시무책과 역대책으로 나뉘며, 서술 방식에 따라 축조식과 구폐식으로 나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⁴¹⁾ 조선 초기에 집책은 역대책과 시무책이 공존하였고, 전책은 질문된 사안에 따라 단락이 구성되는 축조식 시무책이었다. 16세기에 들어서면 집책의 경우에 역대책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전책의 경우에도 이른바 ‘삼복독지법(三伏讀之法)’이라 하는 구폐식 시무 집책의 단락 구성 형식이 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집책과 전책 모두에 구폐식 시무책의 형식이 과책의 단일한 형식으로 자리 잡는다. 17세기 후반에는 특히 중두가 중요시되어, 소위 ‘중두’의 구성 방식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었고, ‘대저’ 단락이 나타났다. 18세기에는 허두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구조’라는 단락이 다시 추가되었다. 정조 연간에는 다시

41) 이상욱, 「조선후기 對策 형식의 역사적 추이」,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축조식의 전책이 시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책문의 구성 형식은, 구한말의姜 위(姜瑋)에 따르면, 허두(虛頭), 중두(中頭), 축조(逐條/軸條), 파제(破題), 대저(大抵), 당금(當今), 주의(主意), 편종(篇終)의 구성을 따른다고도 한다. 과책의 구성도 이와 병행하는지 더 고찰해야 할 일이다.

3. 필기잡록류의 자료

일기나 만필 등 필기잡록류에는 과거 관련 사항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 정조 때 남인 문인 윤기(尹愷)는 『협리한화(峽裏閑話)』에 과폐(科弊)에 관한 매우 주목할 만한 언급을 많이 남겼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충실한 역주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⁴²⁾ 여기서는 생략한다.

김만중(金萬重)의 『서포일기(西浦日記)』(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에는 1680년(숙종 6년) 여름, 공도회시(公都會試)와 관련한 안후태(安後泰, 1636-1689)⁴³⁾의 피험상소(避嫌上疏)가 절록되어 있다. 이 피험상소는 『숙종실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장령 안후태(安後泰)가 혐의를 피하여 말했다. “신은 여름에 공도회 시관(公都會試官)으로 말초(末梢)를 마감할 즈음에 네 차례 참고관(參考官)이 되어 먼저 선발되었던 유생들 가운데 득점이 없는 자들은 모두 퇴거시키고, 단지 40여명

42) 『無名子集』文稿 冊十三〔文〕峽裏閑話【六十五】，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상아(역), 201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DB.

43) 충청북도 음성군 출신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내숙(內叔), 호는 월창(月窓). 광양군(光陽君) 안황(安滄)의 증손이고, 동몽교관 안시수(安時秀)의 아들이다. 1666년(현종 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를 지냈다. 1674년 이후 장령, 필선, 정언을 거쳤다. 1680년(숙종 6) 다시 장령, 정언이 되어 유명건·조성 등을 사판(仕版)에서 지우고 목내선·이하진을 파직시켰다. 12월에 집의가 되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참여했다. 1681년 집의로서 전라우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승정원동부승지에 올랐으나, 1689년 노론으로 기사환국(己巳換局)에 교명(敎命)을 받지 않아 파직되었다가 이 해에 54세로 죽었다. 가선대부 예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만 남겨 두었습니다. 신은 지난번 시험을 맡았던 사람과 함께 한결같이 그들이 지었던 글을 우열에 따라 등급을 매겨 방(榜)을 내어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대신들이 과거를 보는 곳이 난잡하고 엄하지 않았다는 말로 어전에 아뢰어 파직시키도록 요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은 진실로 두렵고 놀라서 이렇게 된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과거를 보는 일이 공정치 못하여 신은 무리들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어찌 오늘 제 자신이 이 일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대신들이 ‘난잡하고 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비록 무슨 일을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은 이미 그때 참고관의 반열에 있었으니 사사로움을 따른 죄는 그기에 해당되는 율법이 있는데, 가벼이 파직만 하는 벌을 내린다면 어찌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에 충분하다 하겠습니까? 신은 부끄러워 죽고만 싶지만 저의 사정을 아릴 방법이 없어 허물을 반성하며 더욱 자책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임금의 은혜로운 서임이 내려지고 새로운 명령을 또 외람되어 받고 보니 신은 이에 대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정에서 거두어 쓰시는 것이 비록 허물을 깨끗이 용서하신 은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신의 정세를 돌아보면 어찌 감히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시 법을 집행하는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심을 다해 진정을 해보았지만 승정원에서 저지되어 저는 집에 었드려 두려워하며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엄한 소명의 아래에 마침내 달려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취는 거듭 명을 어기면서도 여러모로 보나 결단코 벼슬에 머무를 수 없으니 체직을 청합니다.”상께서, “사직하지 마라!”라고 대답했다.⁴⁴⁾

44) (上之六年庚申[清康熙十九年]十二月初十日乙未, 小雪. [夜一更, 彗星見於婁星上, 而形體尾迹, 比昨尤微. 五更, 流星出亢星上, 入南方天際. 狀如瓶尾, 長五六尺許, 色亦光照地.]) - 변역문 제시하지 않음) 掌令安後泰遜嫌曰: “臣於夏間, 以公都會試官, 末梢磨勘之際, 四次參考, 則初頭被抄儒生之無分者, 皆已退去, 只有四十餘人. 臣與同前掌試之人, 一從其所製之優劣, 以爲等第而出榜矣. 厥後, 大臣以科場雜亂不嚴之說, 陳達於榻前, 至有請罷之舉. 臣誠震懼, 不知所以致此也. 向時科事之不公, 臣與儕流, 私相說話, 未嘗不慨歎. 豈意今日身親犯之也. 大臣所謂雜亂不嚴云者, 雖未知指何事, 而臣既忝伊時參考之列, 則循私之罪, 自有當律, 罷職薄罰, 何足以懲其負犯乎. 臣羞愧欲死, 無地伸暴. 追省讐尤, 尤自訟者久矣. 不意恩敘纔降, 新命又叨. 臣於此, 益不知置身之所也. 朝家收用, 雖出於滌瑕之典, 顧臣情勢, 其何敢抗顏, 復廁於執法之地乎. 歷血陳情, 見阻喉司, 縮伏私次, 惶隕度日. 嚴召之下, 竟未祗赴, 罪累之蹤, 重以違慢. 以此以彼,

안후태는 노론으로서 남인과 대립한 인물이었으므로, 공도회의 시관으로서 임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 물의가 있었던 듯하다. 과시 관련의 탄핵이나 피혐은 정치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유척기(兪拓基, 1691-1767)⁴⁵⁾의 『지수재집(知守齋集)』에 실린 잡저(雜著)를 보면, 후대의 저명한 문신으로 고시관아 된 인물도 전고를 몰라 전대의 시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數年前, 申聖與〔申黠〕爲漢學兼教授, 時考試院生, 出一聯曰: ‘飽去櫻桃重, 飢來柳絮輕.’ 院生皆不知所指, 未有能善對者. 余聞之, 叩其出處, 聖與曰: “昔者澤堂掌試, 賦題有蚊蚋事, 一舉人試券云: ‘櫻桃重而飽去, 柳絮輕而飢來.’ 澤堂以爲杜撰而黜之. 後語其事于谿谷, 谿谷曰: ‘此是古人詠蚊詩. 主司之詘也誤矣.’ 澤堂頗有愾然之色云.” 余曰: “吾與兄固不足云. 若澤堂之博雅, 猶見譏於谿谷, 而兄乃以試彼蒙魯之譯學生, 不亦太苛峻乎?” 仍與一嘆. 今日偶見宋人所著『冷齋夜話』〔송나라 청량 혜홍(淸涼慧洪, 1071~1128) 선사(僧)의 저술〕云: “范文正少時, 求爲秦州西溪監鹽, 其志欲吞西夏, 知用兵利病耳, 而解舍多蚊蚋, 文正戲題其壁曰: 飽去櫻桃重, 饑來柳絮輕, 但知離此去, 何用問前程?” 雖戲笑之語, 亦愷悌渾厚之氣逼人, 況其大者乎?” 余於是始詳其出處, 卽以書報於聖與, 想聖與亦必豁然也.⁴⁶⁾

4. 단행(별행) 자료

과거 자료 가운데 책문의 경우는 단행되어 유전하는 것이 적지 않다. 『전책정수(殿策精粹)』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⁴⁷⁾

決不可仍冒, 請遞.” 上答曰: “勿辭.”

45)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김창집(金昌集)의 문인이다. 1714년(숙종 40)에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739년(영조 15) 우의정에 오르자 신임사화 때 세자 책봉문제로 연좌되어 죽은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 두 대신의 복관을 건의하여 신원시켰다.

46) 『知守齋集』卷15 雜著 「雜識」.

47) 임완혁, 「朝鮮前期 策文과 士의 世界認識 - 殿策精粹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또한 1862년 임술농민항쟁기에 시행된 철종의 삼정책문에 대한 응지 삼정책을 모은 『삼정책(三政策)』은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입격자 100인 명단은 송근수(宋近洙, 1818-1902)의 『용호한록(龍湖閑錄)』에 수록된 「경외대책시소방(京外對策試所榜)」에서 살필 수 있는데, 버클리대본 『삼정책』(건곤 2책)의 「경외대책방(京外對策榜)」(건책 수록)에서도 입격자의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입격자 가운데 13명의 대책이 단행되어 있다.⁴⁸⁾ 1862년 단성을 시작으로 임술민란이 확산되고, 1862년 5월 26일에 이정청(釐正廳)이 설치된 후 6월 10일 철종은 구언교로 2품 이하 초야의 유생에게까지 책문을 내리고 2품 이상에게는 헌의(獻議)하도록 했다. 당시 좌의정이며 이정청의 총재관을 맡은 조두순(趙斗淳, 1796-1870)이 철종의 삼정책문을 대제(代製)⁴⁹⁾했으며, 정원용(鄭元容, 1783-1873), 김흥근(金興根, 1796-1870) 등과 함께 독권관(讀券官)을 맡았다. 정원용의 『경산일기(經山日記)』에 의하면 전국에서 만 여장의 시권이 걸렸다.⁵⁰⁾ 박주종이 ‘三中壯元’이며, “調用三中五人, 三下九十五人合百人.”이었다. 이정청은 응지삼정소를 검토하고 윤8월 19일에 『삼정이정절목(三政釐正節目)』을 반포했다. 한편, 송찬섭 씨에 의하면, 입격자 가운데 이승경(『餘事亂藁』), 박주종(『山泉集』), 최술모(『殿策』), 장심학(『江海集』), 기승규(『葛坡逸稿』), 이휘준(『復齋文集』), 황오(『黃綠此集』), 허전(『性齋集』), 이종상(『定軒集』), 유만주(『白渠詩抄』), 윤종의(『硯北三存』)의 대책문이 문집 등에서 확인되고, 단행본 삼정책 12건 가운데서도 박주종 · 이승경 · 김상현 · 허전의 글이 재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허전의 삼

48) 송찬섭, 「1862년 삼정책문(三政策問)에 따른 경외대책(京外對策)의 검토」, 『사림(성대사림)』 48, 수선사학회, 2014, pp.157-193.

49) 洪碧松, 「三政救弊策」, 『三政策』 2, 아세아문화사, 1986, 517쪽.

50) 정원용 저, 허경진 · 전송열 옮김, 『(국역) 경산일록』 5, 서울: 보고사, 2009, p.450, p.314, “仍編次各道策問收券, 近萬張. 諸堂已考閱, 左相書三中五張, 其餘前文衡金炳學, 皆書三下入啓. 是日口教有‘編次等第以入’, 故直爲書等入啓, 取百人.”; 『승정원일기』 윤 8월 19일 “釐整廳啓曰, 京外對策試券, 謹依口傳下教, 考閱後書等第以入, 而實次一百張·預次十張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책은 필사본과 목판본이 있는데, 목판본(규장각 소장본과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삼정책』은 허전의 문도였던 小山 金琦浩(1822~1902)가 다른 문도들과 함께 1886년 음력 2월 현재의 창원인 회산에서 간행한 것이다. 그 해 3월 90세의 허전은 안산군수로 있는 허익의 임소로 떠났으며, 9월 23일 안산군 불권당(不倦堂)에서 타계했다.

<표> 삼정책 단행본

	편저 자	서명	판사 항	소장처	형태정보	구성
1	미상	삼정책	필사 본	버클리대 소장	乾・坤 2冊. 無匡郭, 無界, 10行25字 註雙行, 無魚尾. 35.0 X 23.4cm	乾: 親臨仁政殿策題, 副護軍 許 傳 三政策, 執義 尹致賢 對策 坤: 釐政廳草記, 副護軍 金商鉉 對策, 副護軍 李承敬 對策, 釐 政廳節目, 입격자에 대한 철종 의 전교, 京外對策榜 등
2	미상	임술삼 정대책 문	필사 본	국회도서관 소장	1冊(44張) 無匡郭無界	異聞抄, 禁制條目, 박주중 壬戌 三政對策 이외의 책문들, 策規, 策套 등
3	許傳	삼정책	목판 본	규장각 古6550-1/ 성균관대B11F B-0017	丙戌(1886)仲春 檜山新刊.30.5× 20cm 有界, 10行22字	허전의 삼정책
4	許傳	삼정책	필사 본	국립중앙도서 관 우촌古605-4	1冊(22張)	허전의 삼정책
5	許傳	삼정책	필사 본	국립중앙도서 관 소장	寫本(鐵筆) 1冊(52張): 四周雙邊	관심·경성제국대학교법문학 부'1926년 이후 성책으로 추정
6	許傳	삼정책	필사 본	경상대학교 소장	1冊. 無界.	良岳 朴泰亨(1864-1925) 구장본
7	許傳	삼정책	필사 본	영남대학교 소장	1冊(22張) 無邊無界	晉州 鄭奎元이 지은 通文 1張 筆 寫記 甲子正月始畢於二十三日
8	許傳	三政策 萬言疏 附	필사 본	일본 동양문고본 VII-2-100	1冊(64張) : 四周單邊, 有界.	허전의 삼정책과 直講 朴周雲 의 상소. 謄出之間多有誤落覽 者怒之라는 필사기. 吉田東伍 舊藏.
9	南秉 南秉	奉教撰 進	필사 본	규장각 소장 海士필60	1冊(7張) 匡郭 畧寫 :	남병선(南兵善, 1808-?)은 입격 자는 아니다. 이정청당상 南秉

	善	三政策			四周單邊. 無魚尾	哲(1817-1863)의 백부 南太淳 (1786-?)의 아들이다.
10	미상	삼정책	필사 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6101-9	1冊(35張) 行字數不同	三下 內賜奎章全韻, 辛亥 九月 上浣 歲62 次鐘山謄寫라는 필 사기
11	미상	哲宗御 製三政 策:并壬 戌六月	필사 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31-444	1冊(10張) 無界; 行字數不同	상중이라 삼정책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내용, 당시 입격자 처 리에 대한 정보 서술.정약용의 「전제고」를 언급.
12	미상	殿策	필사 본	수원 명제연구소 조성만 소장	1冊, 無界	三下 입격자 최모술의 삼정책 이 다른 책문과 수록.

『삼정책』 필사 단행본은 목판본이 간행된 이후 전사된 것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물 대조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전사본의 필사본들은 서지적인 가치는 높지 않다. 하지만 허전의 『삼정책』이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일정 지역에서 과책(科策)의 모범이자 삼정의 개정에 관한 현실안으로서 환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지식사회의 지속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5. 시권

2019년 10월 1일, 충남 홍성군은 홍주성역사관이 조선 현종 6년(1665년) 평택 임씨 자손 임유가 과거시험에 제출한 답안지를 문중으로부터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그 기탁 유물 가운데는 ‘과거 급제 아깝게 놓친 354년 전 조선 유생 답안지’가 있어서, 사진으로 공개되었다. 즉, ‘차상’을 받은 임유의 답안지가 그것이다. 과문 명목은 논으로 논제는 「사람의 힘으로 조화를 뺏을 수 있다[人力可以奪造化]」였다. 이것은 정이(程頤)의 설에 근거하고⁵¹⁾ 이이(李珥)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다룬 문제이다.⁵²⁾

51) 『二程遺書』 卷22上, “陳貴一問: ‘人之壽數, 可以力移否?’ 伊川先生曰: ‘蓋有之.’ 唐棣問: ‘如今人有養形者是否?’ 曰: ‘然. 但甚難. 世間有三件事, 至難, 可以奪造化之力. 爲國而至於祈天永命, 養形而至於長生, 學而至於聖人, 此三事, 工夫一

처음에 임유는 외가가 온양
이어서 추가 급제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진정한 온양 출신
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선발에서 제외됐다는 기
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
다고 한다.

그런데 『국조문과방목』에
따르면 종사랑을 지내고 공산
에 거주하던 권기(權愷, 1633-)
가 이 해의 온양정시(溫陽庭
試)에서 병과(丙科) 1위[探花
郎](3/9)로 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선발 인원은
甲1·乙1·丙7의 9명이었다. 권기
는 본관이 안동, 자는 백인(伯



<그림 3> 홍성 홍주성역사관 소장 '차상'
받은 임유 답안지

仁)이며, 권시(權諤)의 아들이다. 이후 대사간에 이르렀으나, 윤증(尹拯)
의 처남으로서 송시열의 배척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에서 감귤(황감)이 진상된 것을 기념하여 치르는 황감제는
1564년(명종 19) 처음 시행했다. 10월에 예조에 황감귤이 진상되면, 신하
들과 성균관 및 4학 유생들에게 나누어 준 뒤 시제(詩題)를 내려 시험을
보게 했다.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목사 당시 화공 김남길에게 그리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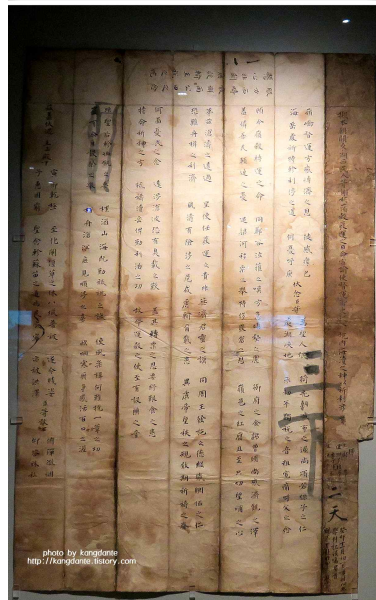
般, 分明人力可以勝造化. 自是人不爲耳. 故關朗有周能過歷秦止二世之說, 誠有此理.”

- 52) 『栗谷先生全書』 卷20 聖學輯要 2 修己 第2上. ‘立志之效’ “陽氣發處, 金石亦
透. 精神一到, 何事不成.”(朱子語) 本註, “程子曰: 世間有三件事, 可以奪造化之
力. 爲國而至於祈天永命, 養形而至於長生, 學而至於聖人, 此三事, 分明人力可
以勝造化, 自是人不爲耳.”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 「감귤봉진(柑橘封進)」의 화제가 있다.



<그림 4>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감귤봉진(柑橘封進)」



<그림 5> <http://kangdante.tistory.com/747>

『일성록』에 보면 정조 7년 계묘(1783) 11월 1일(무자) 반궁(泮宮)에서 감제(柑製)를 실행하고, 정조는 “본조의 관동과 호서 백성들이, 영남의 곡식을 실어 보내던 날에 선유사와 독운 어사에게 명하여 경내의 해신과 독신에게 제사를 지내 무사히 항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빌라고 명한 것을 사려한 데 대해 의작(擬作)하라〔擬本朝關東湖西民人等 謝於嶺穀發運之日 命宣諭使督運御史 設祭境內海瀆之神 以祈利涉〕”는 것으로 진제(箋題)를 삼았다. 정동신(鄭東愼, 1734-1800)이 삼하(三下)의 성적으로 거수(居首)했는데, 그의 시권이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다. 시권 하단 아래에 ‘二天’이라고 있어서, 시권을 100장씩 『천자문』의 글자 순서로 묶을 때 ‘天’자 축의 두 번째로 일찍 낸 답안이었음도 알 수 있다. 정동신은 직부전시하여 이듬해 문과에서 병과(丙科) 10인으로 합격했다. 정동신의

과전(科箋)을 평측 교호의 형식만 보면 아래와 같다. 과전은 과표와 마찬가지로 종서의 쌍비대서(雙展對書)로 표기한다. 여기서는 열람의 편의를 위해 횡서로 제시한다.

嶺嶠督運方感博濟之恩 측측측측평측측측평평
海岳虔祈特軫利涉之道 측측평평측측측측평측

徒感癘已 평측평측
何憂呼庚 평평측평

伏念臣等 측측평측

爲聖人氓 평측평평
處湖峽地 측평측측

荷先朝減布之渥尙頌若保子之仁 거평평측측평측측측측측측평평
承初年鑄稅之音粗寬痛呼父之念 평평평평측평평평평측측측평측

顧念嶺穀轉運之命 측측측측측측평측
益憐吾民顛連之憂 측평평평평평평평

同鄭谷泣菰之嘆方急填壑之慮 평측측측평평평평측평측평측
追梁河移粟之舉特侈發倉之恩 평평평평측평측측측측평평평

御府之金貂曾頒尙感濟飢之澤 측측평평평평평측측측평평측
嶺邑之紅腐且至只切望哺之心 측측평평측측측측측측측평평

第茲滄濤之遠過 측평평평평측평
恐難舟楫之利濟 측평평측평측측

呈使任發運之責非無濟君靈之謨 평측측측측평측평평측평평평평
風濤有險涉之危或慮輸爾載之患 평평측측측평평측측측측측평측

同周王發施之德縱感調恤之仁 평평평측측평측평측평측평평
異處帝烝秩之規敢期祈禱之眷 측평측측측평평측평평측평측

何圖憂民之念 평평평평평측

特命祈神之力 측측평평평평

遠涉滄波恐有臭載之歎 측측평평측측측측평측

祗禱瀆岳俾勤利泊之功 평측측측측평측측평평

盖其轉粟之恩要紓艱食之患 측평측측평평측평평측평측

故命運穀之使至有設醯之音 측측측측평측측측측측평평

非聖后軫恤飢之要 평측측측측평평평*

豈有今日設祭之舉 측측평측측측평측

桂酒山海旣勤祗祝之誠 측측평측측평평측평평

栢舟滄溟庶見順涉之喜 측평평평측측측측평측

使風柔楫何難抗一葦之功 측평평측평평측측측평평

炊烟寒廚爭感活百口之渥 평평평평평측측측측평측

茲盖伏遇 主上殿下 평측측측 측측측측

寅御乾極 평측평측

子惠困窮 측측측평

至化闡偃草之休八域善被 측측측측측평평측측측측

聖念軫蘇苗之道兆民咸寧 측측측평평평측측평평평

遂令賤姿 측평측평

亦被洪澤 측측평측

臣等敢不 평측측측

俯彈微悃 측평평측

仰答殊私 측측평평

眼力西疇敢懈雨公田之念 측측평평측측측평평평측

懸心北闕庶效輸王稅之忱 平平仄측측측측평측평평

정동신의 이 과전을 보면 가세법 즉 염률(簾律)을 철저히 지키면서 송축(頌祝)의 뜻을 반복하여 드리냈음을 잘 알 수 있다.

IV. 맺는 말

조선시대 과거에 대해서는 제도 및 시행세칙의 연혁과 합격자 등용만이 아니라, 부과 문제 및 제목을 연도별, 시험별로 철저히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필수 공용서적(운서, 자서 등), 수험대비용 서적과 수험결과 편찬물 등을 연구해야 한다.

종래 조선시대 과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의 연혁과 합격자 등용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과거에서 부과된 문제나 제목은, 당시 국가가 인재에게 요구하는 현실감각을 문학 및 학문의 내용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념과 논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과거제도를 전면적,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행 세칙을 검토하는 이외에, 부과 문제 및 제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수 공용서적(운서, 자서 등), 수험대비용 서적, 수험결과 편찬물의 유통을 조사하여, 각 시대의 학술 경향과 문화적 역량, 학술논쟁의 역사와 학술방법의 변화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과시(科試) 문제·제목의 DB 구축과 수사문제 및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는 문헌학적 연구, 한문문제 연구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거에 부과된 각종 문제의 특징과 연혁, 필수 공용서적의 편찬과 지정, 수험용 서적 및 수험결과 편찬물의 유통을 연구함으로써 조선시대 학술, 문학, 출판인쇄 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 관련 자료가 다양한 종류의 문헌 자료에 편제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향후의 연구방향 설정에 작은 도움을 주고자 했다.

◇ 논문접수일: 20.08.31 / 심사완료일: 20.09.20 / 게재확정일: 20.09.29.

<참고문헌>

1.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영인본, 탐구당, 1981(48책).
盧思愼·徐居正 외, 『(影印標點)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1999 ; 『국역 동문선』, 고전국역총서 31, 민족문화추진회, 1998.5. 증판 1쇄.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286, 민족문화추진회, 2002.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정본 여유당전서』 수록, 다산학술재단, 2012.12.
正 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2~267, 민족문화추진회, 2001 ; 『국역 홍재전서』, 1998~2000.
『承政院日記』,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DB.
『內閣日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DB.
張晩, 『洛西集』, 韓國文集叢刊續 15, 민족문화추진회, 2006
장만장군기념사업회, 『낙서집 번역본』, 2018.
『三政策』 乾冊·坤冊, 버클리대학 소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 한국학자료센터 제공 DB.
정원용 저, 허경진·전송열 옮김, 『(국역) 경산일록』 5, 서울: 보고서,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권』, 2015.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국립중앙도서관 통합검색 디브러리 (<http://www.nl.go.kr/nl/index.jsp>)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s://riks.korea.ac.kr/kostma/>)

2. 연구논저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16-2, 대한교육법학회, 2004.

- 김동석,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 朴在慶, 「조선시대 策文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朴在慶, 「策文으로본조선시대과거사의이면」, 大東漢文學第38輯, 대동한문학회, 2013.
- 백진우, 「『집책』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센터 제공.
- 송찬섭, 「1862년 三政策問에 따른 京外對策 검토」, 『사림』 28, 수선사학회, 2014, pp.157-193.
- 심경호, 「木活字本 『東國論選』에 관하여」, 『季刊書誌學報』 11, 한국서지학회, 1993.12, pp.130-153.
- 심경호, 『국문학연구와 문헌학』, 태학사, 2002, pp.167-191.
- 심경호, 「『續文範』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총서 10 『續文範 卷之二』,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9.2.27, pp.156-163.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12.
- 심경호, 「한국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체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3, pp.225-300.
- 심경호, 「낙서와 지천 최명길의 창수(唱酬) 및 지천의 서찰에 관하여」, 『열상고전연구』 71, 열상고전연구회, 2020. 6.
- 심재권, 「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한국행정사학지 제37권, 한국행정사학회, 2015.
- 안세현, 「조선중기 文風의 변화와 科文」,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안소연, 「조선시대 經世觀의 변화 연구 : 策問・對策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 윤병태, 「『御試策』과 朝鮮 前期의 小型 活字 印本-反「元刊銅活字本」考-」, 1997.11
- 이병혁, 『한국한문학의 탐구』, 국학자료원, 2003.
- 이상욱, 「조선후기 對策 형식의 역사적 추이」,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 이상욱,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科表 작성을 위한 참고

- 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학회(구 교남한문학회), 2017, pp.159-193.
- 이응백, 「갑오경장 이전의 작문 교육」, 『국어교육』 4,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62, pp.1-73.
- 임완혁, 「朝鮮前期 策文과 士의 世界認識 - 殿策精粹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 39, 대동한문학회, 2013, pp.83-125.
- 조혁상, 『조선후기 도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한국한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 조혁상, 「조선후기 刀劒 素材 科擧 答案 사례에 대한一考察 - 「劒策問」과 「劒對策文」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83, 東方漢文學會, 2020, pp.361~384.
- 최봉수(崔鳳洙), 『옛날의 科擧答案集』, 서광문화사, 199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 최 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策文準의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申万里, 『元代科擧新探』, 北京: 人民出版社, 2018.

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Material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 of Kwashi,
Panje, and Ŭngje* / SIM Kyung-Ho

In pre-modern Korea, “literature” and “scholarship” compromised with political authority and promoted it, or criticized it and sought new methods and contents. Arguing originality of literature withou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authority is not correspond to reality. The most important system in realization of political authority was the method of selecting talents and managing man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the true nature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drift of political authority and development of literature and scholarship.

Previous researches on examination system of Joseon focused on the history of system and selection of talented. However, styles and titles of examination demonstrates the regime's intend to verify contemporary intellectuals' sense of reality through literature and scholarship. An overall and scientific analysis on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requires not only investigating the history of the system, enforcement regulations, and appointments of successful candidates, but also detailed investigation into styles and titles of examination questions, circulation of essential common books (rhyme dictionaries and wordbooks), textbooks for preparation, and compilations of answer sheets have to be studied. These aspects would establish a firm understanding of academic tendency and cultural capability of each era, history of academic dispute, and chronological change of academic method. This paper sets a guideline to follow-up researches by introducing various examination related materials, e.g. a list of successful candidates, literary collections, compilation of answer sheets, miscellaneous records, separate records, exam papers.

Key words: Civil service examination, imperial examination, Kwashi (examinational verse), Kwamun (examinational prose), Panje (academic composition), Ŭngje (answer to the royal examination), Shigwŏn (answer sheet), compilation of answer sheets.